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I. 개요

1. 세입예산

-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도 최종 예산대비 72.7% 감액한 2억 3천 5백만원임.

〈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세입 예산 편성(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2024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179,919	861,197	234,780	54,861	Δ626,417	30.5	Δ72.7
세외수입	179,919	238,917	234,780	54,861	Δ4,137	30.5	Δ1.7
경상적세외수입	20,479	20,479	14,439	Δ6,040	Δ6,040	Δ29.5	Δ29.5
이자수입	20,479	20,479	14,439	Δ6,040	Δ6,040	Δ29.5	Δ29.5
임시적세외수입	159,440	218,438	220,341	60,901	1,903	38.2	0.9
보조금반환수입	159,440	159,440	220,341	60,901	60,901	38.2	38.2
기타수입	0	58,998	0	0	Δ58,998	Δ100	Δ100
지방교부세 등	0	600,000	0	0	Δ600,000	Δ100	Δ100
지방교부세	0	600,000	0	0	Δ600,000	Δ100	Δ100
지방교부세	0	600,000	0	0	Δ600,000	Δ100	Δ1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22,280	0	0	Δ22,280	Δ100	Δ100
보전수입 등	0	22,280	0	0	Δ22,280	Δ100	Δ100
전년도 이월금	0	22,280	0	0	Δ22,280	Δ100	Δ100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2024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179,919	861,197	234,780	54,861	Δ626,417	30.5	Δ72.7
세외수입	179,919	238,917	234,780	54,861	Δ4,137	30.5	Δ1.7
경상적세외수입	20,479	20,479	14,439	Δ6,040	Δ6,040	Δ29.5	Δ29.5
이자수입	20,479	20,479	14,439	Δ6,040	Δ6,040	Δ29.5	Δ29.5
기타이자수입	20,479	20,479	14,439	Δ6,040	Δ6,040	Δ29.5	Δ29.5
임시적세외수입	159,440	218,438	220,341	60,901	1,903	38.2	0.9
보조금반환수입	159,440	159,440	220,341	60,901	60,901	38.2	38.2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0	0	78,760	78,760	78,760	100	100
지체보조금등반환수입	159,440	159,440	141,581	Δ17,859	Δ17,859	Δ11.2	Δ11.2
기타수입	0	58,998	0	0	Δ58,998	Δ100	Δ100
위약금	0	58,998	0	0	Δ58,998	Δ100	Δ100
지방교부세 등	0	600,000	0	0	Δ600,000	Δ100	Δ100
지방교부세	0	600,000	0	0	Δ600,000	Δ100	Δ100
지방교부세	0	600,000	0	0	Δ600,000	Δ100	Δ100
특별교부세	0	600,000	0	0	Δ600,000	Δ100	Δ1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22,280	0	0	Δ22,280	Δ100	Δ100
보전수입 등	0	22,280	0	0	Δ22,280	Δ100	Δ100
전년도 이월금	0	22,280	0	0	Δ22,280	Δ100	Δ1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22,280	0	0	Δ22,280	Δ100	Δ100

2. 세출예산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세출예산은 246억 6천 6백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269억 1천 1백만원 대비 8.3% 감액된 수준이며, 2024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273억 3천 9백만원 대비 9.8% 감액한 수준임.

〈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편성(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2024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26,911,340	27,338,781	24,665,795	Δ2,245,545	Δ2,672,986	Δ8.3	Δ9.8	
행정 관리	소 계	26,911,340	26,738,781	24,665,795	Δ2,245,545	Δ2,072,986	Δ8.3	Δ7.8
	행정운영경비	287,098	287,098	269,971	Δ17,127	Δ17,127	Δ6.0	Δ6.0
	재무활동	0	35,421	0	0	Δ35,421	0	Δ100
	사 업 비	26,624,242	26,416,262	24,395,824	Δ2,228,418	Δ2,020,438	Δ8.4	Δ7.6
교 부 금	0	600,000	0	0	Δ600,000	0	Δ100	

- 2025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4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4 예산		2025 예산	2024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26,911,340	27,338,781	24,665,795	Δ2,245,545	Δ2,672,986	Δ8.3	Δ9.8
자치경찰총괄과	2,937,877	2,997,354	2,413,745	Δ524,132	Δ583,609	Δ17.8	Δ19.5
서울형 자치경찰 조그장착 기반 마련	2,736,186	2,766,186	2,229,705	Δ506,481	Δ536,481	Δ18.5	Δ19.4
자치경찰 제도 정비	638,564	638,564	594,207	Δ44,357	Δ44,357	Δ6.9	Δ6.9
서울시 자치경찰제 홍보	146,053	146,053	107,000	Δ39,053	Δ39,053	Δ26.7	Δ26.7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182,889	182,889	162,001	Δ20,888	Δ20,888	Δ11.4	Δ11.4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309,622	309,622	325,206	15,584	15,584	5.0	5.0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4 예산		2025 예산	2024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 결합 추진	2,097,622	2,127,622	1,635,498	Δ462,124	Δ492,124	Δ22.0	Δ23.1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100,000	100,000	100,000	0	0	0	0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전환사업)	1,476,292	1,506,292	1,053,051	Δ423,241	Δ453,241	Δ28.7	Δ30.1
협력단체 지원(전환사업)	521,330	521,330	482,447	Δ38,883	Δ38,883	Δ7.5	Δ7.5
행정운영경비	201,691	201,691	184,040	Δ17,651	Δ17,651	Δ8.8	Δ8.8
기본경비	201,691	201,691	184,040	Δ17,651	Δ17,651	Δ8.8	Δ8.8
기본경비	201,691	201,691	184,040	Δ17,651	Δ17,651	Δ8.8	Δ8.8
재무활동	0	29,477	0	0	Δ29,477	0	Δ100
보전지출	0	29,477	0	0	Δ29,477	0	Δ100
국고보조금 반환	0	29,477	0	0	Δ29,477	0	Δ100
자치경찰협력과	19,519,323	20,120,736	18,403,866	Δ1,115,457	Δ1,716,870	Δ5.7	Δ8.5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 도시 서울 구축	19,472,276	20,072,276	18,356,870	Δ1,115,406	Δ1,715,406	Δ5.7	Δ8.5
시-경찰 협력 강화	51,900	51,900	43,520	Δ8,380	Δ8,380	Δ16.1	Δ16.1
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 협력체계 구축	51,900	51,900	43,520	Δ8,380	Δ8,380	Δ16.1	Δ16.1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	19,420,376	20,020,376	18,313,350	Δ1,107,026	Δ1,707,026	Δ5.7	Δ8.5
안심동행 서울 자치경찰 시책 공모	0	0	2,000	2,000	2,000	순증	순증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죄 예방활동(전환사업)	116,077	116,077	107,631	Δ8,446	Δ8,446	Δ7.3	Δ7.3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전환사업)	1,790,476	2,190,476	1,181,476	Δ609,000	Δ1,009,000	Δ34.0	Δ46.1
재해·재난 긴급구조 지원 장비 보급	0	0	66,060	66,060	66,060	순증	순증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전환사업)	18,804	18,804	30,953	12,149	12,149	64.6	64.6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	976,840	976,840	99,700	Δ877,140	Δ877,140	Δ89.8	Δ89.8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전환사업)	79,175	79,175	79,004	Δ171	Δ171	Δ0.2	Δ0.2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전환사업)	202,321	202,321	140,916	Δ61,405	Δ61,405	Δ30.4	Δ30.4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4 예산		2025 예산	2024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전환사업)	101,390	101,390	80,237	Δ21,153	Δ21,153	Δ20.9	Δ20.9
위기청소년 선도(전환사업)	691,756	691,756	842,541	150,785	150,785	21.8	21.8
학교폭력 예방활동(전환사업)	421,058	621,058	581,419	160,361	Δ39,639	38.1	Δ6.4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전환사업)	44,630	44,630	44,630	0	0	0.0	0.0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전환사업)	54,034	54,034	38,950	Δ15,084	Δ15,084	Δ27.9	Δ27.9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 수사팀 역량강화(전환사업)	7,500	7,500	7,983	483	483	6.4	6.4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 (전환사업)	7,006,020	7,006,020	7,080,521	74,501	74,501	1.1	1.1
교통홍보활동(전환사업)	246,625	246,625	221,500	Δ25,125	Δ25,125	Δ10.2	Δ10.2
교통장비, 운영비(전환사업)	70,430	70,430	100,083	29,653	29,653	42.1	42.1
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 (전환사업)	50,558	50,558	48,700	Δ1,858	Δ1,858	Δ3.7	Δ3.7
기타 교통활동 지원(전환사업)	658,523	658,523	777,540	119,017	119,017	18.1	18.1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2,313,000	2,313,000	1,771,000	Δ542,000	Δ542,000	Δ23.4	Δ23.4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988,743	1,988,743	2,003,427	14,684	14,684	0.7	0.7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전환사업)	2,185,136	2,185,136	2,674,252	489,116	489,116	22.4	22.4
음주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36,096	36,096	45,696	9,600	9,600	26.6	26.6
음주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76,313	176,313	206,331	30,018	30,018	17.0	17.0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통센터 개선	91,640	91,640	55,800	Δ35,840	Δ35,840	Δ39.1	Δ39.1
다중운집행사 교통안전 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50,000	50,000	25,000	Δ25,000	Δ25,000	Δ50.0	Δ50.0
방법용 CCTV운영(전환사업)	43,231	43,231	0	Δ43,231	Δ43,231	Δ100	Δ100
행정운영경비	47,047	47,047	46,996	Δ51	Δ51	Δ0.1	Δ0.1
기본경비	47,047	47,047	46,996	Δ51	Δ51	Δ0.1	Δ0.1
기본경비	47,047	47,047	46,996	Δ51	Δ51	Δ0.1	Δ0.1
재무활동	0	1,413	0	0	Δ1,413	0	Δ100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4 예산		2025 예산	2024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보전지출	0	1,413	0	0	Δ1,413	0	Δ100
국고보조금 반환	0	1,413	0	0	Δ1,413	0	Δ100
자치경찰지원과	4,454,140	4,220,691	3,848,184	Δ605,956	Δ372,507	Δ13.6	Δ8.8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추진 지원	4,415,780	4,177,800	3,809,249	Δ606,531	Δ368,551	Δ13.7	Δ8.8
자치경찰 복지 증진 및 인권감사	2,098,750	2,098,750	2,027,200	Δ71,550	Δ71,550	Δ3.4	Δ3.4
자치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2,005,500	2,005,500	2,005,000	Δ500	Δ500	0	0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93,250	93,250	22,200	Δ71,050	Δ71,050	Δ76.2	Δ76.2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2,317,030	2,079,050	1,782,049	Δ534,981	Δ297,001	Δ23.1	Δ14.3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1,400,000	1,274,988	700,000	Δ700,000	Δ574,988	Δ50.0	Δ45.1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이전·신축사업(신규)	0	0	437,959	437,959	437,959	순증	순증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 (한강경찰대)(전환사업)	388,871	513,883	400,917	12,046	Δ112,966	3.1	Δ22.0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 (지하철경찰대)(전환사업)	197,706	197,706	182,813	Δ14,893	Δ14,893	Δ7.5	Δ7.5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전환사업)	71,242	71,242	60,360	Δ10,882	Δ10,882	Δ15.3	Δ15.3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	259,211	21,231	0	Δ259,211	Δ21,231	Δ100	Δ100
행정운영경비	38,360	38,360	38,935	575	575	1.5	1.5
기본경비	38,360	38,360	38,935	575	575	1.5	1.5
기본경비	38,360	38,360	38,935	575	575	1.5	1.5
재무활동	0	4,531	0	0	Δ4,531	0	Δ100
보전지출	0	4,531	0	0	Δ4,531	0	Δ100
국고보조금 반환	0	4,531	0	0	Δ4,531	0	Δ100

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8억6천1백만원) 대비 72.7% 감액한 2억 3천 5백만원이며, 모두 세외수입(2억3천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세입예산을 감액한 주요사유는 ① 한강경찰대 중형순찰정 구입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납부 완료,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완료 등에 따라 ‘위약금’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의 미편성에 따른 것임.

〈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2024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179,919	861,197	234,780	54,861	Δ626,417	30.5	Δ72.7
세외수입	179,919	238,917	234,780	54,861	Δ4,137	30.5	Δ1.7
경상적세외수입	20,479	20,479	14,439	Δ6,040	Δ6,040	Δ29.5	Δ29.5
이자수입	20,479	20,479	14,439	Δ6,040	Δ6,040	Δ29.5	Δ29.5
기타이자수입	20,479	20,479	14,439	Δ6,040	Δ6,040	Δ29.5	Δ29.5
임시적세외수입	159,440	218,438	220,341	60,901	1,903	38.2	0.9
보조금반환수입	159,440	159,440	220,341	60,901	60,901	38.2	38.2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0	0	78,760	78,760	78,760	7,876.000	7,876.000
지체보조금등반환수입	159,440	159,440	141,581	Δ17,859	Δ17,859	Δ11.2	Δ11.2
기타수입	0	58,998	0	0	Δ58,998	Δ100	Δ100
위약금	0	58,998	0	0	Δ58,998	Δ100	Δ100
지방교부세 등	0	600,000	0	0	Δ600,000	Δ100	Δ100

지방교부세	0	600,000	0	0	Δ600,000	Δ100	Δ100
지방교부세	0	600,000	0	0	Δ600,000	Δ100	Δ100
특별교부세	0	600,000	0	0	Δ600,000	Δ100	Δ1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22,280	0	0	Δ22,280	Δ100	Δ100
보전수입 등	0	22,280	0	0	Δ22,280	Δ100	Δ100
전년도 이월금	0	22,280	0	0	Δ22,280	Δ100	Δ1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22,280	0	0	Δ22,280	Δ100	Δ100

* ‘특별교부세’는 2024년 1월 29일 간주처리된 “여성범죄인프라 강화 시설비” 4억원과 2024년 9월 24일 간주처리된 “학교폭력 예방활동 시설비” 2억원과 총 6억원이 교부되었으나 2025년에는 교부가 아직 없는바 세입이 감액되었음.

가) 정상적 세외수입

- 자치경찰위원회의 세외수입은 정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1천4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보조금반환수입(2억2천만원)’ 등 총 2억 3천 5백만원으로 전년(2억3천9백만원) 대비 1.7%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정상적 세외수입인 ‘기타이자수입’은 “협력단체 지원 보조금(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과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의 정산 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전년(2천만원) 대비 29.5% 감액한 1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치안협력단체 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기타이자수입) 2025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5년 추계액 : 1,528천원

- 산출내역

• *78,760천원 × 2.52% × 3/4 = 1,488,564원

• **138,922천원 × 0.029% = 40,287원

* 자치구 보조사업 예산 집행잔액 × '24년 서울시 공금예금 적용 금리 × 3/4('24.3월말 교부)

** 자율방범연합회 보조사업의 '22년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 반영, '23년은 민간행사사업보조(150,000천원 / 의원발의, 단년도 사업종료) 집행 부담 과다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이 평년 대비 크게 낮음

◆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 이자반납 수입(기타이자수입) 2025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5년 추계액 : 12,911천원

- 산출내역

· '24년 예산현액 7,002,006천원 × 0.18%* = 12,911천원

- 다만, '기타이자수입'은 매년 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정밀한 세입추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자치경찰위원회 '기타이자수입' 예산 및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2022		2023		2024			2025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월 말 기준)	결산전망	
11	12	70	43	20,479*	15,713	15,713	14,439

* 2022년에는 협력단체 중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보조금만 시비로 지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협력단체 지원과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었던 것이 2023년 전환사업으로 되면서 모두 서울시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 '기타이자수입'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 자치경찰위원회는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발생 사안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의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임시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7천9백만원)', '자체보조금등반환 수입(1억4천1백만원)' 등으로 전년(2억1천8백만원) 대비 0.9% 증액한 2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임시적세외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2024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임시적세외수입	159,440	218,438	220,341	60,901	1,903	38.2	0.9
보조금반환수입	159,440	159,440	220,341	60,901	60,901	38.2	38.2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0	0	78,760	78,760	78,760	7,876,000	7,876,000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59,440	159,440	141,581	Δ17,859	Δ17,859	Δ11.2	Δ11.2
기타수입	0	58,998	0	0	Δ58,998	Δ100	Δ100
위약금	0	58,998	0	0	Δ58,998	Δ100	Δ100

* ‘위약금’은 한강경찰대 순찰정 납품 지연(기한 '23.12.30., 납품 '24.3.13.)에 따른 지체상금이었음.

- 신규 편성한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자율방범대 복장 및 장비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에 교부한 시비 집행잔액 반납(7천9백만원)이며,

◆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5년 추계액 : 78,760천원
- 산출내역 : 자치구별 매칭비율에 따른 집행 후 시비 집행잔액 반납 78,760천원

* 해당 사업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 집행률 93.6% 예상에 따른 집행잔액 산출 및 천원단위 이하 절사
(자치구 매칭예산 편성현황 및 집행현황 제출자료('24.5.) 참고하여 집행률 추정)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협력단체 지원 보조금(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과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의 정산 후 집행잔액으로 전년(1억 5천9백만원) 대비 11.2% 감액한 1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치안협력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5년 추계액 : 11,344천원
- 산출내역 :
 - 민간경상사업보조 : 138,922천원 × *2.6% = 3,612천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7,732천원

- * '22년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 반영('23년은 민간행사사업보조(150,000천원)(의원발의, 단년도 사업종료) 집행 부담 과다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이 평년 대비 크게 낮음)
- ** 해당 사업예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집행률 80.1% 예상에 따른 집행잔액 산출 및 천원단위 이하 절사(교부시점 지연으로 초단기간근로자 인건비 지원예산(12개월) 중 일부(8개월)만 집행 예정('24.5. 1차 교부))

◆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5년 추계액 : 130,237천원
 - 산출내역 : '24년 예산현액 7,002,006천원 × 1.86%* = 130,237천원
- * '22년 2.25%, '23년 1.48% 평균치 1.86%

※ '22년 ~ '23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천원단위)

구 분	교부금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잔액 비율 [(A-B)/(A)]
2022년('23년 세입)	6,428,067	6,283,435	144,632	2.25%
2023년('24년 세입)	6,797,309	6,696,811	100,498	1.48%

- 다만,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보조금 교부 당시부터 정확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불필요한 반환금 발생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교부한 보조금의 정확한 정산과 함께 매년 세입처리 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자치경찰위원회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예산 및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2022		2023		2024			2025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월 말 기준)	결산전망	
1,791	1,791	2,700	2,624	159,440*	112,093	112,093	141,581

* 2022년에는 협력단체 중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보조금만 시비로 지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협력단체 지원과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었던 것이 2023년 전환사업으로 되면서 모두 서울시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검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세출예산은 246억 6천 6백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269억1천1백만원) 대비 8.3% 감액한 수준이며, 2024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273억3천9백만원) 대비 9.8%(26억 7천3백만원) 감액하였음.

〈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편성(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2024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26,911,340	27,338,781	24,665,795	Δ2,245,545	Δ2,672,986	Δ8.3	Δ9.8
행정안전부	소 계	26,911,340	26,738,781	Δ2,245,545	Δ2,072,986	Δ8.3	Δ7.8
	행정운영경비	287,098	287,098	Δ17,127	Δ17,127	Δ6.0	Δ6.0
	재무활동	0	35,421	0	Δ35,421	0	Δ100
	사업비	26,624,242	26,416,262	24,395,824	Δ2,228,418	Δ2,020,438	Δ8.4
교 부 금	0	600,000	0	0	Δ600,000	0	Δ100

가) 신규 및 20% 증감액 사업 현황

-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246억6천6백만원) 중 사업비 예산은 243억 9천 6백만원으로, 2024년 최종예산(246억1천6백만원) 대비 7.6%(20억 2천만원) 감액한 수준임.
-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비 예산 중 자치경찰위원회 자체사업(13개) 예산은 전년(43억5천만원) 대비 6.0% 감액한 40억 5천만원이며, 전환사업(29개) 예산은 전년(221억1천만원) 대비 8.0% 감액한 203억 4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 자체사업 및 전환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2024년 최종예산	2025년 예산(안)	2024년대비증감	증감률(%)
사업비	26,416,262	24,395,824	△2,020,438	△7.6
자체사업(13개)	4,305,842	4,051,746	△254,096	△6.0
전환사업(29개)	22,110,420	20,344,078	△1,766,342	△8.0

* 2024년 전환사업비는 교부금 600,000천원 제외한 것임.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예산 중 2025년 신규사업은 “안심동행 서울 자치경찰 시책 공모” 사업에 2백만원, “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장비 보급” 사업에 6천 6백만원,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이전·신축” 사업에 4억 3천 8백만원 등 총 5억 6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신규사업 현황 : 3개 사업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별 설명서)	사업명	2025년도	편성 사유
1 (p59)	안심동행 서울 자치경찰 시책 공모	2,000	- 시민이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 필요성이 있어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공모 및 선정하기 위한 예산 신규편성
2 (p72)	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장비 보급	66,060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폭우 등 각종 재해·재난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순찰차(734대)에 탑재 가능한 긴급구조 물품(모래주머니, 쇠지렛대, 쇠절단기, 인공호흡용 마스크 등) 구매를 위한 예산 신규편성
3 (p187)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이전·신축	437,959	- 건물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인 안전문제, 긴급 출동 및 교대 근무 등 한강 상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센터 이전·신축 지원하고, 노후 시설장비 개선을 통한 대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한강 상 시민 안전망 확보를 위한 예산 신규편성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 이상 증액 사업(당초예산 기준)은 “위기청소년 선도(전환사업) (8억4천2백만원, 21.8% 증액)”, “학교폭력 예방활동(전환사업)(5억8천1백만원, 38.1% 증액)”,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26억7천4백만원, 22.4% 증액)” 등 6개 사업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산출기초에 따른 증액 인지 여부와 사업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증액사업 현황(20% 이상) : 6개 사업 〉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별 설명서)	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증감		증액사유
				증 감	비율(%)	
1 (p75)	불법풍속사범 단속 역량 강화(전환사업)	18,804	30,953	12,149	64.6	- 단속 건수 증가에 따라 관련 비용 증액 및 피의자 도주 및 추락방지용 방범망 신규 설치에 따른 증액
2 (p99)	위기청소년 선도 (전환사업)	691,756	842,541	150,785	21.8	- 소년범 지속증가로 전문기관 24개소 지정하여 연계 선도 프로그램(사랑의교실)운 영비 예산 증액
3 (p105)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환사업)	421,058	581,419	160,361	38.1%	- 행정안전부 공모선정에 따라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교육장비 구매비 증액
4 (p132)	교통장비, 운영비 (전환사업)	70,430	100,083	29,653	42.1	- 교통전담 경찰관대상 교통 안전 활동 교통장비 지급 및 견인차 운전요원 안전 장구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5 (p153)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운영(전환사업)	2,185,136	2,674,252	489,116	22.4	- 스쿨존 단속장비 운영 수량이 기존 983대에서 1,200대로 증가함에 따른 운영비 예산 증액
6 (p157)	음주단속장비 구매 (전환사업)	36,096	45,696	9,600	26.6	- 사용연한(7년)이 경과한 음주 감지기 238대 불용처리에 따른 구매 예산증액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 이상 감액 사업(당초예산 기준)은 관광경찰대 폐지에 따른 사업종료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전액감액)”, 경찰청·방법용 CCTV 이관 계획(17.7.6.)에 따라 2024년 5월 CCTV 자치구 이관 완료로 사업을 종료하는 “방법용 CCTV운영(전환사업)(전액감액)”, “서울시 자치경찰제 홍보(1억7백만원, 26.7% 감액)”,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1억원, 89.8% 감액)”,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17억7천만원, 23.4% 감액)”,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7억원, 50.0% 감액)” 등 14개 사업으로 사업비 감액이 사업 효과성에 영향은 없는지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한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감액사업 현황(20% 이상) : 14개 사업 〉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별 설명서)	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1 (p19)	서울시 자치경찰제 홍보	146,053	107,000	Δ39,053	Δ26.7	- 공모전 실시 횟수조정(매년 →격년)에 따른 예산 감액
2 (p42)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1,476,292	1,053,051	Δ423,241	Δ28.7	- 자치구 자율방범대 근무복 및 안전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4년 기지원된 품목, 수량 제외 하고 잔여수량 편성에 따른 예산 감액
3 (p67)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1,790,476	1,181,476	Δ609,000	Δ34.0	- 개소당 구축비를 증액하되, 개소수를 조정하여 감액
4 (p80)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	976,840	99,700	Δ877,140	Δ89.8	- 범죄예방 안심물품 지원 사업이관(안심벨) - 스토킹,데이트 폭력예방 홍보물품 제작 예산 감액
5 (p89)	실종예방 및 신속 발견 체계(전환사업)	202,321	140,916	Δ61,405	Δ30.4	- wi-fi 배회감지기 개발 보급 완료에 따른 감액
6 (p94)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전환사업)	101,390	80,237	Δ21,153	Δ20.9	- 시설 합동점검 대상 학대 예방교육 홍보자료 예산 감액
7 (p116)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전환사업)	54,034	38,950	Δ15,084	Δ27.9	- 장애인 성범죄·학대 예방 활동 홍보자료 제작·구매 비용 감액
8 (p145)	무인단속장비 구매 (전환사업)	2,313,000	1,771,000	Δ542,000	Δ23.4	- 과속 후면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의 구매단가 하향 조정

연번 (사업별 설명서)	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 24년 66대 대비 4대 감소 구매(25년 62대)에 따른 예산감액
9 (p164)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통센터 개선	91,640	55,800	Δ35,840	Δ39.1	- 신발건조기 보급 완료에 따른 감액
10 (p167)	다중운집행사 교통 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50,000	25,000	Δ25,000	Δ50.0	- 회의실대관비 예산감액 및 안전관리 물품 재활용에 따른 예산감액
11 (p177)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93,250	22,200	Δ71,050	Δ76.2	- 자치경찰 및 인권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완료에 따른 감액
12 (p183)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1,400,000	700,000	Δ700,000	Δ50.0	-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신규 교체 5개년 계획에 따라 '25년 구매분 반영
13 (종료)	관광경찰대 운영 (전환사업)	259,211	-	Δ259,211	Δ100	- 서울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개정('24.1.19)으로 관광경찰대 폐지되어 사업종료
14 (종료)	방범용 CCTV운영 (전환사업)	43,231	-	Δ43,231	Δ100	- 경찰청방범용cctv이관 계획('17.7.6)에 의거 24년 5월 자치구 이관완료하여 사업종료

나) 중앙정부의 자치경찰사무(전환사업) 예산 보장 필요

-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중 전환사업 예산은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으로, 2022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2023년부터 지방소비세 인상(21% → 25.3%)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2023년 서울시 자치경찰예산 의무편성 규모는 2022년 국고보조금(152억원)보다 18억원 감액한 134억원을 통보하였으며, 이를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할 예정임.¹⁾

1)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8호)에서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 '26년)”이라고 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시의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23년은 172억 4천만원으로 의무편성 134억원보다 38억원, 2024년은 221억 1천만원으로 의무편성 규모보다 87억원, 2025년은 203억 4천만원으로 의무편성 규모보다 69억 4천만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사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행태라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자치경찰사무(전환사업) 예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국고보조금	2023년 최종예산	2024년 최종예산	2025년 예산(안)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	15,190,909	17,237,097	22,110,420	20,344,078
의무편성 134억원 기준대비 초과편성액	-	3,837,097	8,710,420	6,944,078

〈 2025년 자치경찰사무(전환사업) 예산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사업명	2024년 예산최종	2025년 예산안	2024년 대비증감	증감률(%)
1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1,506,292	1,053,051	Δ453,241	Δ30.1
2	협력단체 지원(전환사업)	521,330	482,447	Δ38,883	Δ7.5
3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전환사업)	116,077	107,631	Δ8,446	Δ7.3
4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1,790,476	1,181,476	Δ1,009,000	Δ46.1
5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전환사업)	18,804	30,953	12,149	64.6
6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	976,840	99,700	Δ877,140	Δ89.8
7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전환사업)	79,175	79,004	Δ171	Δ0.2
8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전환사업)	202,321	140,916	Δ61,405	Δ30.4
9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전환사업)	101,390	80,237	Δ21,153	Δ20.9
10	위기청소년 선도(전환사업)	691,756	842,541	150,785	21.8

구분	사업명	2024년 예산최종	2025년 예산안	2024년 대비증감	증감률(%)
11	학교폭력 예방활동(전환사업)	421,058	581,419	Δ39,639	Δ6.4
12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전환사업)	44,630	44,630	0	0.0
13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전환사업)	54,034	38,950	Δ15,084	Δ27.9
14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 강화(전환사업)	7,500	7,983	483	6.4
15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7,006,020	7,080,521	74,501	1.1
16	교통홍보활동(전환사업)	246,625	221,500	Δ25,125	Δ10.2
17	교통장비, 운영비(전환사업)	70,430	100,083	29,653	42.1
18	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전환사업)	50,558	48,700	Δ1,858	Δ3.7
19	기타 교통활동 지원(전환사업)	658,523	777,540	119,017	18.1
20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2,313,000	1,771,000	Δ542,000	Δ23.4
21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988,743	2,003,427	14,684	0.7
22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2,185,136	2,674,252	489,116	22.4
23	음주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36,096	45,696	9,600	26.6
24	음주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176,313	206,331	30,018	17.0
25	방법용 CCTV운영(전환사업)	43,231	0	Δ43,231	Δ100
26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한강경찰대)(전환사업)	513,883	400,917	Δ112,966	Δ22.0
27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 활동(지하철경찰대)(전환사업)	197,706	182,813	Δ14,893	Δ7.5
28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전환사업)	71,242	60,360	Δ10,882	Δ15.3
29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	21,231	0	Δ21,231	Δ100
계		22,110,420	20,344,078	Δ1,766,342	Δ8.0

* 2024년 최종예산에서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교부금 400,000천원, 학교폭력 예방활동(전환사업) 교부금 200,000천원은 제외한 최종예산액임.

- 또한, 불합리한 전환사업 보전금 기준액(서울시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 보전금 134억원)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이후 자치경찰사무 재원은 오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되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자치경찰제도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고 할 수 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에서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직·인사에 대해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사무 예산을 부담 하도록 의무를 전가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적극적·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더 나아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목적세 신설,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자치경찰사무 관련 교통 범칙금, 유실물 매각금 등 지방 이양, 소방특별회계와 같은 자치경찰특별 회계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한 제도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목적세”는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되는 조세이고, 현재 지방교부세 중 용도가 지정된 특별·소방안전교부세가 있고, 소방의 경우에는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재정 및 시·도 소방 특별회계 설치법」이 있음. 따라서, 자치경찰도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교부세’를 신설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균등한 지역 치안 행정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다) 공포 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2023년 10월 4일 일부개정·시행으로, 제55조의2제4항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재정수반조례에 대한 예산반영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과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교육감은 직전 연도 5월부터 해당 연도 4월까지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반영현황(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예산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안(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말한다) 심의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한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는 아래와 같음.

※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2.4.26. 제정, '23.4.27.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자율방범대, 연합대, 연합회까지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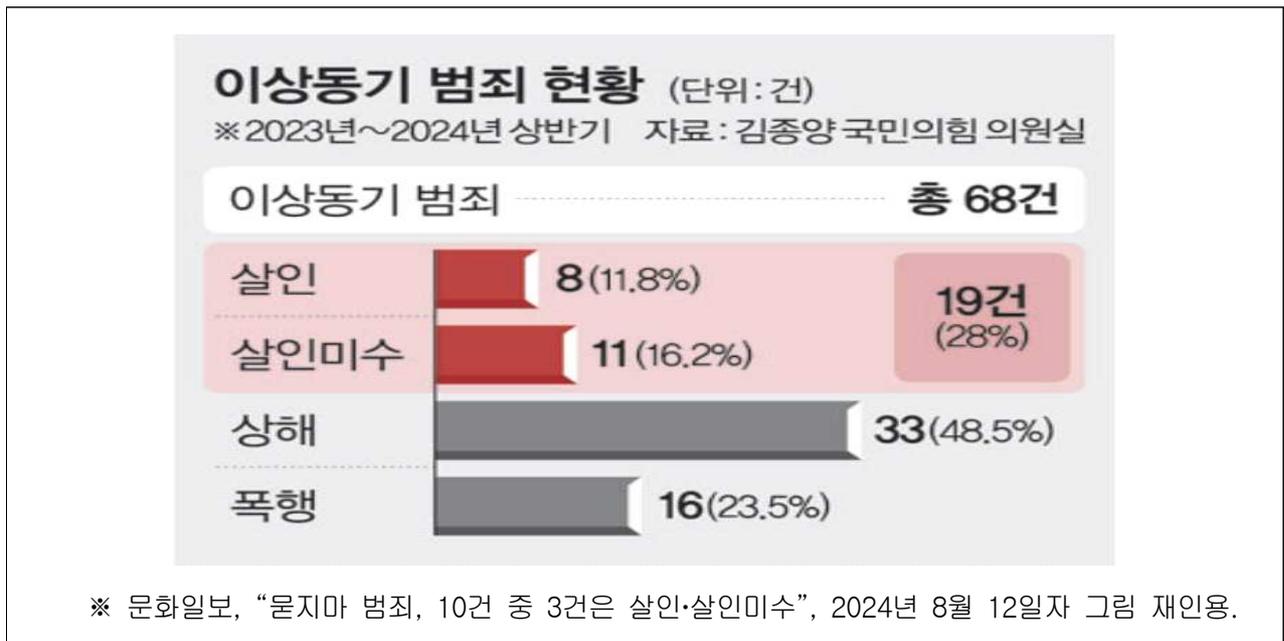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이상동기 범죄 예방 사업(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23.5. ~ '24.4.) >

공포일	조례명	예산반영 현황	향후 예산반영 계획
'23.12.29.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24년) 1,606백만원 - 자율방범대 지원 ·(복장·장비) 1,260백만원 ·(교육·홍보) 188백만원 ·(기타) 19백만원 -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공익활동 사업비) 100백만원	▶('25년) 1,153백만원(안) - 자율방범대 지원 ·(복장·장비) 862백만원 ·(교육·홍보) 150백만원 -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공익활동 사업비) 100백만원

공포일	조례명	예산반영 현황	향후 예산반영 계획
		·(운영비) 39백만원	·(운영비) 41백만원
'23.12.29.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24년) 1,422백만원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범죄예방 인프라 개발·시공) 1,372백만원 ·(맞춤형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50백만원	▶('25년) 816백만원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범죄예방 인프라 개발·시공) 750백만원 ·(맞춤형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50백만원 ·(지능형 승강기안전 플랫폼 설치) 16백만원

- 이상동기 범죄는 최근에도 은평구 일본도 사건('24.7.), 전남 순천시 여고생 사건('24.9.), 수원 편의점 흉기 난동 사건('24.10.) 등이 발생하였고,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1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총 68건이며, 살인(미수 11건)은 19건으로 전체 28%, 상해는 33건(48.5%), 폭행은 16건(23.5%)이었고, 길거리 등 공개 장소에서 발생한 범행이 49건(72.1%)으로,²⁾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³⁾



2) 문화일보, “묻지마 범죄, 10건 중 3건은 살인·살인미수”, 2024년 8월 12일자 참조.

3) 최근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범죄를 꼽았으며, 이는 2022년 13.9%에서 2024년 17.9%로 상승하였음(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 결과”, 2024년 11월 12일자 보도자료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중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2025년 예산반영 계획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교육 홍보”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바, 여성·노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이나 범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연루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예방·대처 및 112신고 요령 등의 교육이나 홍보 확대를 통해 시민안전 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안심동행 서울 자치경찰 시책 공모(신규)

- 동 사업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치안 정책을 발굴·개선하고, 기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안심동행 서울 자치경찰 시책 공모”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0	0	2,000	2,000	순증
사무관리비	0	0	2,000	2,000	순증

〈 “안심동행 서울 자치경찰 시책 공모”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지역맞춤형 치안정책 발굴·지원 = 2,000천원 - 2차 선정심사(면접)위원회 참석 수당 200,000원*4명*1회 = 800천원 - 2차 선정심사(면접)위원회 운영 물품 구매 200,000원*1회 = 200천원 - 공모사업 홍보(온라인)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1,000,000원*1회 = 1,000천원
	증감사유	
	○ 경찰서 대상 사업공모를 통해 지역맞춤형 치안 정책 발굴·지원하는 '26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 동 사업은 현재 광역 자치경찰제 시행 중이나, 기존에 서울특별시경찰청 (이하 “서울경찰청”이라 함)이 수행하던 전환사업 위주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고, 지방행정(서울시, 자치구)과 치안행정(서울경찰청, 경찰서)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자치경찰만의 특화(인구구성, 지리적 위치 등 자치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추진)된 신규사업 발굴로, 지방치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음.

〈“안심동행 서울 자치경찰 시책 공모” 사업 개요〉

- 사업명 : ‘안심동행 서울 자치경찰 시책 공모’
- 사업기간 : '25. 1 ~ 12월 (단년도 사업)
- 추진방법 : 사업공모 통해 5개(안) 사업 선정 후 '26년 예산 확보하여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 : 경찰서
 - 지구대·파출소 단위 사업도 가능하나 신청 및 예산집행은 경찰서에서 수행
- 주요내용
 -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정책을 선정·지원
 - 자치구-경찰서 협업 사업(구비 매칭사업) 우선 지원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도 2024년 4월에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 공모를 통해 1차로 6개 사업 ① 안양동안경찰서의 ‘미사용 치안센터 활용, 경찰협력단체 거점센터 조성’, ② 용인서부경찰서의 ‘청소년 범죄 예방 3D 애니메이션 제작 및 퀴즈 APP개발’, ③ 용인동부경찰서의 안전조치 종결 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젠더폭력 피해자 대상 민간경비서비스 지원’ ④ 안양만경경찰서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등 ‘우리 동네 마약 안심 클린존 운영’, ⑤ 김포경찰서의 ‘공공버스 광고를 활용한 음주운전 예방’, ⑥ 김포골드라인 경전철 역사 계단 래핑 등 ‘PM교통안전 홍보’ 사업을 진행하였고, 6월에 1차로 3개 사업 ① 경기남부경찰청의 ‘여성안심귀갓길 방법 시설물 디자인 표준화’, ② 오산경찰서의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한 범죄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③ 하남경찰서의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콘텐츠 홍보’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음.⁴⁾

- 이는 경찰서-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경찰서별로 사업비 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지원하여 시의성 확보 및 서울시와 자치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 2025년에는 공모예산만 편성(2백만원)하고, 발굴된 사업은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으나, 예측이 힘든 치안 상황은 1년 후의 상황은 변할 수도 있는 등 변동가능성이 크므로, 공모 후 당해연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을 병행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추진은 아닌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이전·신축(신규)

- 동 사업은 한강경찰대 센터 건물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인 안전문제, 긴급 출동 및 교대 근무 등 한강 상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센터 이전·신축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촌센터(한강 이촌공원내)를 여의도(한강 여의도공원내, 여의도동 86-7)로 이전·신축(지상 2층)하기 위한 ‘시설비’ 등으로 4억 3천 8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한강경찰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8조, 제35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사무로, 한강경찰대는 한강 41.5km 인명구조, 수색활동, 범죄예방·단속활동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며, 2024년 7월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 한강의 치안력을 대폭 확충하고자 한강경찰대 대원이 39명에서 52명으로 총 13명이 증원되었음.

4)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위, 6개 ‘지역특화 정책발굴 사업’ 추진”, 2024년 4월 23일자; 아주경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지역문제 해결 위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2차 선정”, 2024년 6월 28일자 참조.

〈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이전·신축”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0	0	437,959	437,959	순증
사무관리비	0	0	10,000	10,000	순증
시설비	0	0	427,959	427,959	순증

〈 한강경찰대 조직·인력 〉

○ 1대장(경정), 5팀(행정팀, 수상안전 4개팀) / 근무자 52명

구 분	망원본대	이촌센터	뚝섬센터	광나루센터
발족	2005	1992	2009	1992
소재지	마포구 망원동	용산구 이촌동	광진구 자양동	강동구 천호동
관할구역	행주 ~ 마포대교 (15.3km)	마포 ~ 한남대교 (8.3km)	한남 ~ 잠실대교 (7.9km)	잠실 ~ 강동대교 (10.0km)

○ 치안센터 4개소 : 망원(본대), 이촌, 뚝섬, 광나루 / 순찰정 9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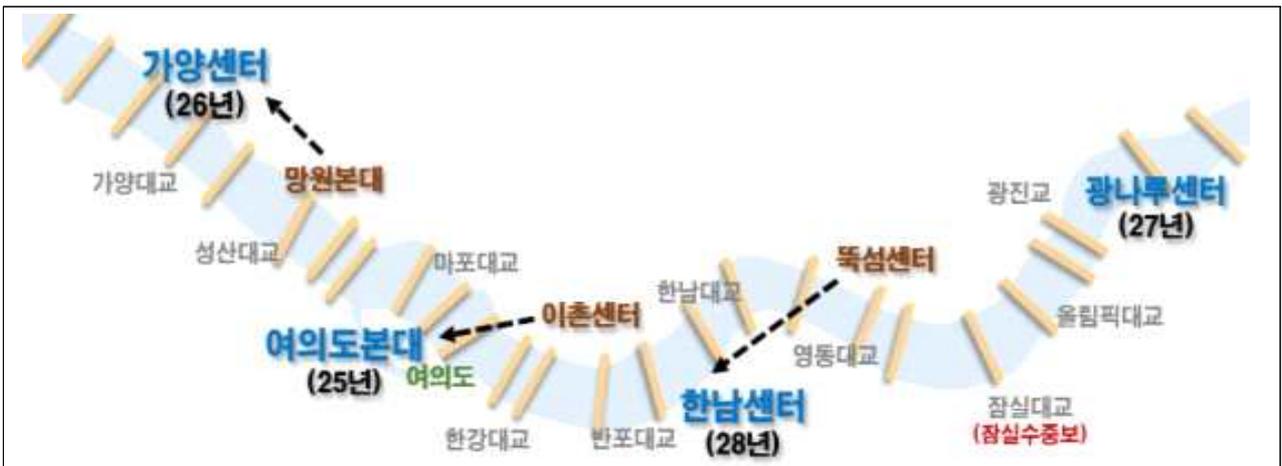
	망원(본대) (마포 ~ 행주) 순찰정 3척	
	이촌 (한남 ~ 마포) 순찰정 2척	
	뚝섬 (잠실 ~ 한남) 순찰정 2척	
	광나루 (강동 ~ 잠실) 순찰정 2척	
㉗행주, ㉘방화, ㉙마곡, ㉚가양, ㉛월드컵, ㉜성산, ㉝양화, ㉞당산철교, ㉟서강, ㊱마포, ㊲원효, ㊳한강철교, ㊴한강, ㊵동작, ㊶반포, ㊷한남, ㊸동호, ㊹성수, ㊺영동, ㊻청담, ㊼잠실, ㊽잠실철교, ㊾올림픽, ㊿천호, ③광진, ②암사, ①강동대교		

※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329면 재인용.

○ 한강경찰대 이촌센터의 사용연수는 32년이 경과(내구연한 11년)되어 노후도가 심각하며, 잦은 침수에 따른 건물 부식 심화, 업무 특성상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즉시 출동 상황이 다수 발생하나, 사무 및 장비보관소 분리로 신속한 출동 및 구조업무처리 어려움 등이 있어 근무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추진(서울항, 수상호텔)에 따른 여의도 인근 수난구조 및 치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촌센터를 여의도로 이전·신축하려는 것임.

※ 한강경찰대 연차별 시설개선계획(시장방침 제153호, '23.12.29.)은 2023년 4월 서울시장과 한강경찰대 오찬 간담회 시 시설개선 요청에 따른 것으로, 6월에 서울경찰청과 한강경찰대 센터 재배치안 협의를 완료하고, 11월에 미래한강본부와 119수난구조대와 여의도본대 위치 조정안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촌센터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한강경찰대 연차별 센터 이전 계획 〉



〈 한강경찰대 이촌센터 현황 〉

구분	센터 현황			계류장 현황			비고
	소재지	준공	관할구역	위치	재산구분	면적	
이촌센터	 용산구 이촌동 (이촌공원내)	1992년 총 131㎡ (사무실 36㎡)	한남대교 (상류) ~ 마포대교 (하류)	한강대교 북단 (동측방향)	미래 한강본부 운영총괄과 (하천점용 사용중)	150㎡	

※ 해당 건축물은 '92년 준공 후 32년이 경과하여 내구연한(11년)을 초과
 · 조달청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 기준으로 조립식 구조물의 내용연수는 11년

- 한강경찰대 이촌센터는 한강대교 북단, 이촌한강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남대교(상류)부터 마포대교(하류)까지 8.3km를 관할하고 있으며, 4개의 센터 중 가장 출동이 많은 센터로 이촌에서 여의도 이전에 따라 마포대교 등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더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고,5)

〈 한강경찰대 센터별 출동 및 구조현황(2021년~ 2024년 9월) 〉

(단위 : 건, 명)

구 분	계		망원본대		이촌센터		뚝섬센터		광나루센터		기타	
	출동	구조	출동	구조	출동	구조	출동	구조	출동	구조	출동	구조
계	11,238	261	1,954	53	4,909	61	1,592	25	1,717	30	1,066	92
'21년	2,579	73	380	17	1241	22	393	7	374	8	191	19
'22년	3,184	44	566	8	1400	13	421	2	480	10	317	11
'23년	3,434	60	646	13	1390	10	481	5	527	5	390	27
'24년 9월까지	2,041	84	362	15	878	16	297	11	336	7	168	35

※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332면 재인용.

〈 최근 3년간 마포대교 투신 신고 현황 〉

(단위 : 건)

구 분	계	2021	2022	2023	비고
신고건수	2,146	667	750	729	-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센터가 이전하는 여의도 한강공원은 2023년 연간 이용객이 1,163만명으로 한강공원 전체 이용객 6,049만명 대비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추진(서울항, 수상호텔 등)에 따라 여의도 인근 수난구조 및 치안 수요 대응력 확보를 위한 센터 이전은 필요하다고 하겠음.

5)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이촌에서 여의도로 센터 위치 이전에 따라 교량으로 출동 시 평균 출동시간 31초가 단축된다고 하고 있음.

〈 2023년 서울시 한강공원 이용객 현황 〉

(단위 : 명)

구분	이용객	구분	이용객
광나루	2,066,716	여의도	11,633,359
잠 실	4,558,814	양 화	3,482,403
뚝 섬	10,482,434	망 원	2,533,593
잠 원	3,193,465	난 지	2,480,242
반 포	13,319,020	강 서	3,049,563
이 촌	3,689,292	소 계	60,488,901

※ 이용객은 일반이용자, 운동시설, 자전거 등 이용자, 주요행사 및 마라톤, 특화공원(수상무대, 서울색 공원, 음악분수, 갈대숲탐방로, 세빛섬 등 포함), 기타(전망쉼터, 캠핑장, 눈썰매장, 수영장/물놀이장 등) 이용자를 포함한 이용객 수치임.

※ 미래한강본부(<https://hangang.seoul.go.kr/>)-알림마당-행정자료실-한강공원 이용자 통계, 2024년 11월 5일.

- 다만, 한강경찰대 연차별 센터 이전 계획을 살펴보면, 이촌센터가 여의도로 이전하는 시기는 2026년 6월이고, 뚝섬센터가 한남으로 이전하는 시기는 2028년으로 이촌센터가 여의도로 이전 후, 뚝섬센터가 한남으로 이전하는 2028년까지 2년여의 기간 동안 뚝섬센터의 관할구역 확대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 등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한강경찰대 센터 시설 개선 예산은 전액 서울시가 자체 부담으로 지원 하고 있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치경찰사무가 전환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고, 앞으로 그 비용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강경찰대 센터 이전 및 신축 사업 등 자치경찰사무 장비 개선 등에 대한 예산은 국고보조금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정부 건의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비보조 등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 동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을 통한 지방자치와 치안행정의 유기적 결합 도모, 회의 적기 개최로 원활한 서울경찰청 지휘·감독,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것으로, 전년(1억8천3백만원) 대비 11.4% 감액한 1억 6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82,889	182,889	162,001	△20,888	△11.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689	23,689	24,401	712	3.0
사무관리비	91,300	91,300	78,000	△13,300	△15.0
공공운영비	5,000	5,000	8,000	3,000	60.0
국외업무여비	30,000	30,000	20,000	△10,000	△33.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10,000	10,000	0	0
특정업무경비	21,600	21,600	21,600	0	0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	1,300	0	△1,300	△100

- 동 사업 중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용(사무관리비)’의 감액은 최근 3년간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수당 집행현황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수당’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5년 예산 편성안	50,700	-	-	-
2024년 10월까지	61,500	47,080	12,370	23.44
2023	200,000	57,370	142,630	71.31
2022	(시비)111,000	38,480	72,520	65.33
	(국비)200,000	17,838	182,162	91.08
2021	97,960	30,305	68,360	69.06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다음으로,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비(사무관리비)’는 전년(340만원)과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비’ 예산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불용(’23년 47%, ’24년 10월까지 59%)이 높은바,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연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위원 수당 편성에 있어서, 무분별한 편성 및 집행은 지양하고,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실소요액을 기반으로 한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비’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5년 예산 편성안	3,400	-	-	-
2024년 10월까지	3,400	1,400	2,000	59
2023년	3,400	1,800	1,600	47
2022년	38,400	13,803	24,597	64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그리고, 2023년 9월 경찰청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경찰청도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생활안전부, 교통지도부를 범죄예방대응부, 생활안전교통부로 개편하였으며, 관광경찰대는 폐지하였고,
 -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원을 개편 전(2023년 3,838명,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31개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2024년 9월말 기준 3,806명으로 32명 감소하였고, 서울경찰청은 413명에서 325명으로 88명이 감소하였음.

〈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 현황(’24.9.30. 기준) 〉

관서별	분야			범죄예방대응 (지하철경찰대 포함)		범죄예방질서		여성안전과 (청소년보호과 포함)		교통관리		교통안전		실종수사	
	전년 대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전 체	-32	3,838	3,806	448	365	212	181	1,129	1,226	154	154	1,671	1,667	207	200

관서별	분야			범죄예방대응 (지하철경찰대 포함)		범죄예방질서		여성안전과 (청소년보호과 포함)		교통관리		교통안전		실종수사	
	전년 대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위원회	-4	17	13	-	-	-	-	-	-	-	-	-	-	-	-
서울청	-88	413	325	194	129	65	43	51	52	24	23	75	75	4	3
중 부	0	90	90	7	6	9	8	23	26	3	2	44	44	4	4
중 로	+5	101	106	6	6	7	8	25	25	4	4	56	59	3	4
남대문	+1	92	93	7	6	5	4	20	21	3	4	52	53	5	5
서대문	+2	109	111	9	8	8	7	33	38	4	4	49	48	6	6
혜 화	-2	80	78	7	6	3	3	20	23	3	3	42	39	5	4
용 산	+4	110	114	8	8	3	3	32	35	4	4	57	58	6	6
성 북	0	88	88	6	6	2	3	29	27	3	4	43	44	5	4
동대문	+4	121	125	9	9	5	5	38	38	4	4	60	62	5	7
마 포	+9	138	147	11	8	5	4	38	49	4	7	71	71	9	8
영등포	+3	144	147	9	9	4	5	37	41	6	4	79	79	9	9
성 동	-2	102	100	9	8	3	4	33	34	4	4	47	45	6	5
동 작	+4	112	116	9	7	9	10	32	38	3	3	51	51	8	7
광 진	+1	111	112	9	8	4	3	39	43	3	3	49	48	7	7
서 부	+5	78	83	7	7	3	3	31	32	3	4	30	33	4	4
강 북	+7	107	114	9	11	4	4	36	41	3	3	49	49	6	6
금 천	+5	92	97	9	9	3	3	33	37	3	4	38	38	6	6
중 랑	+2	125	127	9	10	12	8	42	43	5	6	49	53	8	7
강 남	+6	120	126	6	6	4	4	31	40	6	5	67	65	6	6
관 약	+4	129	133	9	8	4	4	44	51	5	6	58	55	9	9
강 서	+2	129	131	8	6	5	4	45	50	4	4	57	57	10	10
강 동	+1	127	128	10	8	4	5	42	44	5	5	58	58	8	8
중 암	+3	79	82	8	6	3	3	27	30	2	3	35	36	4	4
구 로	+3	114	117	10	9	4	3	40	45	5	6	48	47	7	7
서 초	+3	125	128	7	7	3	2	37	41	10	7	60	63	8	8
양 천	-5	125	120	9	8	4	4	46	45	4	3	53	51	9	9
송 파	-4	155	151	9	7	6	6	47	51	9	7	74	71	10	9
노 원	+2	131	133	10	9	6	6	47	54	4	4	55	52	9	8
방 배	-1	72	71	6	6	3	2	21	21	3	3	35	35	4	4
은 평	0	90	90	7	7	3	2	32	34	4	4	39	38	5	5
도 봉	-2	104	102	9	9	5	4	41	41	2	2	41	40	6	6
수 서	0	108	108	6	8	4	4	37	36	5	5	50	50	6	5

※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154면 재인용.

-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사무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 및 안전관리 등 자치경찰사무 업무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원 감축은 안정적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장을 줄 수 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정적인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에 건의를 통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경찰청에 의해 새로 신설된 기동순찰대 주요 업무는 범죄우려지역, 관광지 등 주요 장소에서의 범죄예방 순찰 및 대응 활동, 기초질서위반 단속 등 주민밀착형 경찰 활동 등으로 자치경찰사무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는 기동순찰대 임용권 행사와 지휘·감독을 통하여 지역순찰을 통한 범죄예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주요업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내역

○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주요 업무(서울경찰청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

1. 범죄우려지역, 관광지 등 주요 장소에서의 범죄예방순찰 및 대응 활동
2. 기초질서위반 단속 등 주민밀착형 경찰 활동
3. 살인 등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대응 및 지원 활동
4. 범죄예방 캠페인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 활동
5. 그 밖에 서울경찰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치안수요에 따른 경력 지원 활동

○ 기동순찰대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내역 : 1건

- (안전명) 주요 관광지 불법행위 단속 관련 지원 및 협조(2024.6.4.)
- (지휘내용) 서울경찰청은 기동순찰대 및 해당 지구대·파출소로 하여금 관광지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관광객 대상 강매 및 바가지 요금·불법 숙박업소 등 합동단속시 경찰력 지원을 협조하기 바람

※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157면 재인용.

- 마지막으로, 지난 6월 28일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제2기 위원회는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을 비전으로 발표하고,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① 안전한 우리동네의 시작, 시민중심 자치경찰, ②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약자동행 자치경찰, ③ 첨단기술 활용으로 스마트한 자치경찰을 제시하고 있는바,⁶⁾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을 통해 안전한 서울 구축으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사) 협력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 동 사업은 민·경 협력치안 기반 조성으로 주민참여 범죄예방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15억6백만원) 대비 30.0% 감액한 10억 5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협력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476,292	1,506,292	1,053,051	△453,241	△30.0
사무관리비	156,000	156,000	14,000	△142,000	△9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10,000	10,000	0	0
자율방범대실비지원	0	0	126,320	126,320	순증
행사실비지원금	22,320	22,320	0	△22,320	△1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8,922	38,922	40,786	1,864	5.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30,625	1,260,625	861,945	△398,680	△32.0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425	18,425	0	△18,425	△100

6)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 자치경찰의 비전, 시민과 나누다…제2기 위원회 정책 본격화”, 2024.9.10.자 참조.

- 동 사업 ‘사무관리비’ 중 자율방범대 간담회 및 워크숍, 자율방범대 모집 홍보물 예산과 ‘행사실비지원금’은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 신설(23.4.27.)에 따라 해당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비용 지급을 위한 근거를 ‘자율방범대실비지원’ 통계목 구체화에 따라, 7) ‘자율방범대실비지원’으로 이관에 따른 순증임.

현행		개정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1 일반 보전금	06.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1.~2. (생략) 3.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운용비	301 일반 보전금	06.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1.~2. (생략)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

- 동 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자율방범대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시가 자율방범대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바, 순찰효과의 극대화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복장·장비를 자치구 예산과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12억3천만원) 대비 32.0% 감액한 8억 6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2024년 이미 지원된 품목을 제외하고 잔여수량을 고려한 감액은 적절하다고 하겠음.

〈 ‘민·경 협업치안 순찰장비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민·경 협업치안 순찰장비 지원 = 1,230,625천원	○ 민·경 협업치안 순찰장비 지원 = 861,945천원
	-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 = 1,112,512천원	- 자율방범대 근무복(하복) 구입 112,200원*9,624명*46% = 496,714천원
	▷ 춘추복(상·하의) 118,800원*9,929명*46% = 537,661천원	- 자율방범대 근무복(방한복) 구입 165,000원*4,812명*46% = 365,231천원
	▷ 캡모자 13,200원*9,929명*46% = 59,740천원	

7)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24.7., 26-27면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한복 165,000원*4,964명*46% = 373,375천원 ▷ 방법조끼 66,000원*4,711명*46% = 141,736천원 - 자율방범대 안전장비 구입 = 118,113천원 ▷ 순찰신호봉 20,000원*4,711명*46% = 42,950천원 ▷ LED후레쉬(손전등) 18,000원*4,711명*46% = 38,655천원 ▷ 전자호각 17,000원*4,711명*46% = 36,508천원 	
	증감사유	
	<p>○ 자치구 자율방범대 근무복 및 안전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4년 기 지원된 품목, 수량(춘추복, 캡모자, 방한복, 방법조끼, 안전장비) 제외하고 잔여수량 편성에 따른 예산 감액 ※ 인원은 '24.5월말 기준 9,166명에서 5% 증가한 9,624명으로 산정</p>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연합대, 방범대 현황('24.9.30.기준) 〉

연 번	자치구	연합대	자율방범대	대 원(명)	연 번	자치구	연합대	자율방범대	대 원(명)
1	종로	2	23	464	14	마포	1	16	355
2	중구	2	14	265	15	양천	1	18	436
3	용산	1	18	293	16	강서	1	19	494
4	성동	1	17	353	17	구로	1	21	423
5	광진	1	19	297	18	금천	1	15	290
6	동대문	1	15	410	19	영등포	1	28	553
7	중랑	1	21	447	20	동작	1	19	288
8	성북	2	20	443	21	관악	1	22	443
9	강북	1	12	192	22	서초	2	15	502
10	도봉	1	15	255	23	강남	1	22	401
11	노원	1	16	231	24	송파	1	25	472
12	은평	2	16	340	25	강동	1	19	359
13	서대문	1	13	242	계	25개	30	458	9,248

※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414면 참조.

- 다만, ‘민·경 협업치안 순찰장비 지원’은 자치구 예산과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2024년 불용예산액이 1억 1천만원(예산 불용률 9.1%)으로, 이는 동대문, 노원구 등이 구비 매칭 예산 일부 미확보에 따라 시비를 교부하지 못해 결국 불용 처리할 예정인바, 자치구의 조기 예산 편성을 독려하는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4년 ‘민·경 협업치안 순찰장비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10월 19일 기준)	집행잔액 (10월 19일 기준)	불용예상액	예상 불용률(%)
협약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230,625	494,879	735,745	112,563	9.1

-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별 자율방법대 복장 및 순찰장비 지원 현황에서 25개 자치구 중 근무복 지원완료는 15개 자치구, 10월이나 11월에 지원예정인 자치구가 10개이며, 안전장비는 지원완료가 2개 자치구, 10월~12월 지원예정인 자치구가 21개, 지원이 없는 자치구 2개 (동대문, 노원구)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법대의 복장 및 순찰장비의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을 조속한 시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치구별 복장 및 순찰장비 지원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구분	매칭비		'24년 소요예산		구비 편성 현황		추진현황(계획포함) (9월 기준)	
		시	구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확보율	근무복	안전장비
				1,230,625	1,469,292	1,377,717	94%		
1	종로구	40	60	57,021	85,531	85,531	100%	지원예정(10월)	지원예정(11월)
2	중구	40	60	31,325	46,987	46,987	100%	지원완료	지원예정(10월)
3	용산구	40	60	31,325	46,987	46,987	100%	지원완료	지원예정(12월)
4	성동구	40	60	42,215	63,322	62,917	99%	지원완료	지원예정(12월)
5	광진구	50	50	36,403	36,403	36,403	100%	지원완료	지원예정(11월)
6	동대문구	50	50	70,358	70,358	40,000	57%	지원완료	-
7	중랑구	50	50	70,052	70,052	69,542	99%	지원완료	지원예정(11월)
8	성북구	50	50	66,993	66,993	61,182	91%	지원예정(10월)	지원예정(11월)
9	강북구	50	50	25,696	25,696	25,696	100%	지원완료	지원완료
10	도봉구	50	50	36,403	36,403	33,714	93%	지원예정(10월)	지원예정(10월)
11	노원구	50	50	39,156	39,156	21,596	55%	지원완료	-
12	은평구	50	50	42,215	42,215	42,215	100%	지원완료	지원예정(11월)

연번	구분	매칭비		'24년 소요예산		구비 편성 현황		추진현황(계획포함) (9월 기준)	
		시	구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확보율	근무복	안전장비
13	서대문구	50	50	29,061	29,061	29,061	100%	지원예정(11월)	지원예정(11월)
14	마포구	40	60	45,763	68,645	48,134	70%	지원예정(11월)	지원예정(11월)
15	양천구	50	50	71,276	71,276	71,276	100%	지원예정(10월)	지원예정(11월)
16	강서구	50	50	66,840	66,840	66,840	100%	지원예정(10월)	지원예정(10월)
17	구로구	50	50	68,064	68,064	68,064	100%	지원완료	지원완료
18	금천구	50	50	35,638	35,638	35,638	100%	지원예정(10월)	지원예정(11월)
19	영등포구	40	60	56,776	85,164	85,164	100%	지원완료	지원예정(11월)
20	동작구	50	50	44,815	44,815	44,815	100%	지원완료	지원예정(10월)
21	관악구	50	50	60,875	60,875	60,875	100%	지원예정(10월)	지원예정(11월)
22	서초구	40	60	53,839	80,759	80,759	100%	지원완료	지원예정(12월)
23	강남구	30	70	36,433	85,011	71,280	84%	지원완료	지원예정(11월)
24	송파구	40	60	61,915	92,873	92,873	100%	지원완료	지원예정(11월)
25	강동구	50	50	50,168	50,168	50,168	100%	지원예정(11월)	지원예정(11월)

※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416면 재인용.

- 그리고, 「자율방범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경찰청장도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청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으며, 서울시는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복장·장비를 지원함에도 「자율방범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는 예산만 지원하고 실제로 지역에 대한 방범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지도·감독) 시·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한다.

1.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복장·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 ② 시·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 활동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시·도경찰청장등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 자율방범대·연합대·연합회 지원근거 현황 〉

구 분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
조직 및 구성	읍·면·동 단위 1개 다만,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 고려해 2개 이상 둘 수 있음	시·군·구 단위 1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 1개
신 고	경찰서장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지도·감독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피출소장은 자율방범대원 활동 지도·감독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경비의 지원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1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u> · <u>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u>	· <u>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u> · <u>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u>	· <u>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u> · <u>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u>
경비의 지원 항목	·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설치비(시설 임차 경우 그 임차비용 포함) 및 운영비 ·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선도비 ·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연합대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 연합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 임차 경우 그 임차비용 포함) 및 운영비 ·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 그 밖에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연합회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 연합회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 임차 경우 그 임차비용 포함) 및 운영비 ·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 그 밖에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아) 협력단체 지원(전환사업)

- 동 사업은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협력단체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교통 안전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전년(5억2천1백만원) 대비 7.5% 감액한 4억 8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협력단체 지원(전환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521,330	521,330	482,447	△38,883	△7.5
사무관리비	521,330	521,330	482,447	△38,883	△7.5

- 이는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5조의3,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제4조) 따라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역량강화 및 근무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도로교통법」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 모자, 근무복, 점퍼 등
2. 장비: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각 학교의 등·하교 시간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 활동
2.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활동
3. 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교통협력단체(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현황('24.9월 기준) 〉

단체명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5조의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년도	'98년 9월	'06년 2월
구성인원	31개서, 4,731명	15개서 85초교, 35,706명
대표자	박○팔	길○원
주요활동	러쉬아워, 주요행사 교통 보조 및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교통안전 캠페인
사업수행주체	서울청	서울청

※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390면 재인용.

- 최근 자지구 등에서 지원하는 등갯길 안전지원단(또는 교통안전지도사) 증가로 녹색어머니회 인원 감소('23년 22개 75,177명 → '24년 15개서 35,706명)함에 따라 '녹색어머니회 피복 및 안전용품 지원(사무관리비)' 예산 감액은 적절하다고 하겠음.

〈 '녹색어머니회 피복 및 안전용품 지원(사무관리비)'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교통안전 협력단체 지원 = 96,530천원	- 녹색어머니회 피복 및 안전용품 지원 = 69,975천원
	▷ 하계 정복 72,505원*22개서*45벌 = 71,780천원	▷ 하계 정복 73,000원*15개서*45벌 = 49,275천원
	▷ 근무 와이셔츠 25,000원*22개서*45벌	▷ 근무 와이셔츠 26,000원*15개서*45벌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 24,750천원	= 17,550천원
		▷ 어깨경광등 21,000원*15개서*10개 = 3,150천원
증감사유		
○ 녹색어머니회 인원 감소('23년 22개서 75,177명 → '24년 15개서 35,706명)에 따른 물품지원 예산 감액		

-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운전자회 물품은 동계근무복 하의와 방한모를 9월에 업체와 계약하여 제작 중이고, 녹색어머니회 물품은 하정복과 우의로 10월에 업체와 계약하여 제작 중으로, 겨울에 다가오는 시점에 하정복과 우의 지급이 적절한 물품지급인지 여부와 물품지급 시기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협력단체의 복제 및 안전물품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을 조속한 시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모범운전자회 물품 지원(제작)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물품명	개수	단가	비고
서울경찰청	동계근무복 하의	5,500	50	업체 계약(24.9.9) 제작 중
	방한모	5,015	26	업체 계약(24.9.9) 제작 중

녹색어머니회 물품 지원(제작)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물품명	개수	단가	비고
서울경찰청	하정복	300	111	업체 계약(24.10.7) 제작 중
	우의	563	32	업체 계약(24.10.2) 제작 중

※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423면 재인용.

자) 지역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전환사업)

- 동 사업은 범죄예방진단팀 운영을 지원하여 범죄취약요소 선제 파악 및 조치,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을 통한 민·경 협력치안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전년(1억1천6백만원) 대비 7.3% 감액한 1억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지역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전환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16,077	116,077	107,631	△8,446	△7.3
사무관리비	108,451	108,451	78,270	△30,181	△28.0
시설비	0	0	21,735	21,735	1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26	7,626	7,626	0	0

- 동 사업중 ‘시민참여 범죄예방교육 지원 및 시민경찰학교 운영(사무관리비)’의 경우 시민경찰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경찰서가 저조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다고 하고 있음.

〈 ‘시민참여 범죄예방교육 지원(사무관리비)’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시민참여 범죄예방교육 지원 = 12,901천원	
	- 경찰학교 실습 학점제 운영 = 850천원	
	▷ 형광물질페인트 구입 50,000원*7개소 = 350천원	
	▷ 교재 등 학습용품 구입 50,000원*10명 = 500천원	
	- 시민경찰학교 운영 2,762,610원*4개서 = 11,051천원	

구분	기능별	프로그램명	운영실적 (참여인원)	강사(명)
	기타	약손마사지·영양교육·웃음치료·호신술		
		중점 치안시책 및 경찰홍보 등		
		합동순찰		
2024년 (3개서) 동대문 마포 강동	여성·청소년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총 270명 동대문(25) 마포(20) 강동*(225)	내부강사 5 외부강사 5
	교통안전	교통법규, 교통 안전교육		
	생활안전	범죄예방 합동순찰, 캠페인 참여		
		시민경찰학교 및 공동체치안 설명		
	기타	시뮬레이션 사격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박물관 등 견학		
		중점 치안시책 및 경찰홍보 등		
심폐소생술, 건강관리 등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제출자료 재인용.

- 시민경찰학교는 지역주민 대상 치안정책 소개·범죄예방요령 교육 등으로 경찰이해도 제고 및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경찰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다양한 경찰 체험을 통해 경찰 관심도 제고 및 범죄예방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음에도, 희망 관서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사업방식의 변경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민대상 교육을 직접 시행 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동 사업 중 ‘공동현관 프리패스 구축 사업(시설비)’을 위해 2천 2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고, 이는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 내 112신고 시 경비인력 부재 등의 사유로 신속한 내부 진입이 어려워 초동 조치가 늦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현관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동으로 출입이 가능하게 하여 긴급신고 시에 신속 대응을 위한 것으로, 경찰관서 공모를 통해 공동주택 내 112신고 현황, 아파트 주민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1~2개 경찰서 선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공동현관 프리패스 시스템」



<무선리모콘 및 수신기>

- ▶ **개 요:** 공동현관(수신기) ↔ 경찰관(리모콘)을 활용한 개문 시스템, 신속 출입 가능
- ▶ **수신기 설치:** 공동현관 내 동일 설정값의 수신기 장착
- ▶ **리모콘 보관:** 순찰차마다 1개씩 보급
※ 공동현관 개소당 20만원, 리모콘 개당 7천원

○ 시스템 운영 방법

- (수신기) 필요 공동주택 1층 공동현관에 리모콘과 연결되는 수신기 설치
- (리모콘) 공동현관에 설치된 수신기와 연결된 무선리모콘을 활용 신고시 진입
- (관 리) 공동현관 설치 수신기는 공동주택에서 관리하고, 무선리모콘은 관내지·파출소 경찰관이 관리하며 근무 교대 시 인수인계 확인 등 24시간 관리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제출자료 재인용.

- 이는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무선리모콘 활용으로 공동현관 등을 개문하는 시스템으로 리모콘 분실 등으로 인해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차)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 동 사업은 범죄 취약지 및 일상에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장소에 범죄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전년(21억9천만원) 대비 46.0% 감액한 11억 8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790,476	2,190,476	1,181,476	△1,009,000	△46.0

구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사무관리비	368,476	368,476	365,476	△3,000	△1.0
시설비	1,422,000	1,822,000	816,000	△1,006,000	△55.2

- 동 사업의 ‘시설비’ 예산 감액은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 사업대상지는 줄이고, 범죄·112신고·주민 불안 등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도록 31개 경찰서별 맞춤형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중 ‘시설비’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시설비	○ 범죄예방 인프라 개발·시공(공모) 175,000,000원*5개소 = 875,000천원	○ 범죄예방 인프라 개발·시공 250,000,000원*3개소 = 750,000천원
	○ 범죄예방 인프라 개발·시공(비공모) = 497,000천원	○ 맞춤형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1,612,900원*31개서 = 50,000천원
	- 관악구 100,000,000원*1개소 = 100,000천원	○ 지능형 승강기안전 플랫폼 설치 16,000,000원 = 16,000천원
	- 중랑구 297,000,000원*1개소 = 297,000천원	
	- 서초구 100,000,000원*1개소 = 100,000천원	
	○ 맞춤형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1,612,900원*31개서 = 50,000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 사업대상지를 줄이고 개선이 필요한 우선순위 개소로 선정하되, 범죄·112신고·주민 불안 등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도록 개소당 예산 집중 투여를 위한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0개소 1,775백만원 → (2025) 3개소 750백만원 ○ 전담 관제인력이 없는 한강공원 내 승강기에 지능형 승강기안전 플랫폼을 설치하여 다양한 위험에 즉시 대응 		

- 다만, 31개 경찰서별로 맞춤형 범죄예방물 설치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1개 경찰서별로 160만원으로, 적절한 맞춤형 범죄예방물 설치가 가능할지 여부 등 편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맞춤형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개요 〉

- 사업대상 : 범죄예방 관리구역 및 주민 민원지역 등
- 사업내용 : 지역 치안환경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 * 로고젝터, LED 신고안내판, 솔라표지병, 안심거울, 포토존 조형물 등
- 소요예산 : 50,000천원(시설비)
- 향후계획
 - 경찰서별 맞춤형 범죄예방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 25.1. ~ 3.
 - 경찰서별 설치계획 검토 및 선정(자경위·서울청) : ' 25.4.
 - 맞춤형 범죄예방시설물 설치(경찰서) : ' 25.5. ~ 10.
 - 맞춤형 범죄예방시설물 결과보고 및 평가 : ' 25.11.
 - 우수 범죄예방시설물 공유 및 확산 : ' 25.12.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제출자료 재인용.

- 또한,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장 불안 요인으로 범죄가 17.9% 가장 높았으며,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느낀 비중도 30.5%로 2년(29.6%) 전보다 0.9% 증가하였고, 여자(44.9%)가 남자(15.8%)보다 야간 보행 시 불안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⁸⁾
 - 서울시의 최근 5년간(2019년 ~ 2023년)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하였지만,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전체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였고, 2023년 5대 강력범죄에서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살인('22년 104건 → '23년 150건), 강도('22년 117건 → '23년 129건)는

8)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 결과”, 2024년 11월 12일자 보도자료 참조.

증가하였는바, 적재적소의 장소에 맞춤형 범죄예방 인프라 확대를 통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 설계와 맞춤형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역별 전체범죄 발생건수 및 구성비 추이(2019년~2023년) 〉

(단위: 건, %)

지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건수	구성비								
서울	309,269	19.7	296,178	19.2	257,969	18.7	279,507	19.5	277,213	18.2
부산	113,138	7.2	113,652	7.4	100,439	7.3	105,057	7.3	106,433	7.0
대구	75,797	4.8	72,373	4.7	67,915	4.9	66,786	4.7	66,674	4.4
인천	90,608	5.8	88,143	5.7	76,584	5.5	82,397	5.7	87,831	5.8
광주	44,274	2.8	43,517	2.8	39,392	2.9	38,900	2.7	42,058	2.8
대전	45,168	2.9	44,623	2.9	39,982	2.9	43,736	3.0	43,327	2.9
울산	32,780	2.1	31,381	2.0	29,085	2.1	27,286	1.9	29,859	2.0
세종	6,111	0.4	6,276	0.4	5,937	0.4	6,575	0.5	7,603	0.5
경기	394,276	25.1	394,226	25.6	357,243	25.8	364,534	25.4	378,157	24.9
강원	46,096	2.9	44,571	2.9	39,593	2.9	41,715	2.9	43,173	2.8
충북	48,085	3.1	47,864	3.1	43,397	3.1	44,055	3.1	42,157	2.8
충남	62,666	4.0	61,612	4.0	54,223	3.9	59,196	4.1	61,507	4.0
전북	48,252	3.1	47,446	3.1	43,650	3.2	45,199	3.2	46,143	3.0
전남	52,698	3.4	51,519	3.3	48,380	3.5	48,062	3.3	49,909	3.3
경북	77,449	4.9	73,762	4.8	65,553	4.7	66,928	4.7	67,953	4.5
경남	96,212	6.1	97,998	6.4	87,879	6.4	88,852	6.2	90,536	6.0
제주	26,090	1.7	27,129	1.7	25,515	1.9	26,103	1.8	26,836	1.8
해양경찰청	42,939	2.7	45,596	2.9	47,090	3.3	47,545	3.2	52,471	3.5
계	1,611,906	100.0	1,587,866	100.0	1,429,826	100.0	1,482,433	100.0	1,520,200	100.0

※ 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2023년, 22면 재인용.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 정보공개 - 경찰청범죄통계, 2024년 10월 28일 최종방문)

〈 최근 5년간 서울시 5대 범죄 발생현황(2019년~2023년) 〉

(단위: 건, 명)

연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23	150	144	129	117	5,764	5,395	37,038	21,600	43,132	37,567
2022	104	98	117	112	5,816	5,344	37,579	20,205	46,783	39,338
2021	124	112	122	116	4,911	4,446	33,531	17,950	41,757	35,388
2020	141	126	138	132	5,763	5,458	38,293	19,705	48,344	41,127
2019	136	128	136	133	6,469	6,007	42,204	21,284	54,723	47,253

※ 출처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s://data.seoul.go.kr/>, 2024년 10월 28일 최종방문).

○ 다음으로, 동 사업에서 ‘지능형 승강기안전 플랫폼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천 6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이는 한강공원 내 39개소에서 총 52개 승강기를 설치·운영('24.11월 현재) 중이나 공원 센터별로 관제 전담 인력은 없어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즉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지능형 승강기안전 플랫폼’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쓰러짐, 폭행, 화재 등의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긴급출동 등 공동대응 하기 위한 것으로 3대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지능형 승강기안전 플랫폼 주요기능 〉

- IoT 기반 지능형 안전장치 "Safety Hub" 탑승자 |**
 - 쓰러짐, 폭행, 화재, 음성인식 등 응급상황 감지 등
 - 영상기반 스마트 비상전화(승강기 위치 자동전송)
 - 실시간 구조 진행상황 표시(출동현황 및 도착예정시간)
- GIS 기반 승강기 관제시스템 관리자**
 - 갑힘사고, 고장신고 등 위험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 위치기반 온라인 상황전파(근거리 현장기사 호출 등)
 - 사고·고장 처리결과 및 이력관리 등
- 모바일 기반 상황전파시스템 현장기사·관리자**
 - 긴급출동 공동대응(단계별 진행상황 전파, 처리내용 등)
 - 시스템간 메시지 전송 기능 및 승강기 내부 1:1 영상통화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승강기 탑승자가 신고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폭행 상황 등의 자동감지를 통해 긴급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한강공원 내 승강기(총 52개) 중 3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를 위한 승강기 선정에서 한강공원 내 위험지역이나 승강기 이용은 적어도 외진 곳에 설치된 승강기 등 설치 장소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을 통한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 동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경찰, 교사 등 은퇴한 전문 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실종, 학대 등) 및 청소년 선도활동 보조 등 아동·청소년 안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70억6백만원) 대비 1.1% 증액한 70억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7,006,020	7,006,020	7,080,521	75,501	1.1
사무관리비	4,014	4,014	4,014	0	0
민간경상사업보조	7,002,006	7,002,006	7,076,507	74,501	1.1

「아동복지법」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 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서울특별시경찰청 예규 제14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아동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아동안전지킴이”란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아동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실종·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안전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소속) 아동안전지킴이는 각 경찰서장이 위촉하며, 지구대(팀)장 또는 파출소장 소속 하에 활동한다.

-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 성폭력, 학교 폭력, 실종·유괴 등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및 아동안전 지도업무를 통하여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아동안전지킴이’ 현황(’24.9월 기준) 〉

(단위 : 명)

자치구	지킴이	자치구	지킴이	자치구	지킴이	자치구	지킴이
중구	24	영등포구	46	중랑구	48	양천구	60
종로구	26	성동구	42	강남구	66	송파구	82
서대문구	38	동작구	42	관악구	44	노원구	84
용산구	30	광진구	44	강서구	70	도봉구	46
성북구	58	은평구	60	강동구	58	계	1,218
동대문구	42	강북구	28	구로구	52		
마포구	44	금천구	36	서초구	48		

※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643면 재인용.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사례 현황(’24.9월 기준) 〉

(단위 : 건)

구 분	’22년	’23년	’24년 9월
계	3,420	9,295	4,152
학교폭력예방	123	1,479	314
성폭력예방	13	1,060	8
실종예방	83	1,166	282

구 분	'22년	'23년	'24년 9월
비행선도	36	749	122
환경개선	85	215	85
유실물인계	77	198	28
범죄신고	5	10	3
아동보호	206	860	302
교통안전	2,001	3,068	2,444
사회적 약자보호	107	70	403
기타*	684	420	161

* 기타 : 관내 순찰, 길 안내, 시설물 점검, 아동 대상 예방교육 등

※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646면 재인용.

- 다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24.10.22.) “소모품 교체시기 등 재검토 필요하다”는 조건부 적정 결과에 따라 ‘아동안전지킴이’에게 지급하는 소모품 교체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의 사업비(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난 2년 연속 예산편성액 대비 과도한 규모의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22년 1억4천4백만원, '23년 1억원), 자치경찰위원회는 아동안전지킴이의 민간보조 사업 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2년 ~ 2023년 ‘아동안전지킴이(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

(단위 : 천원)

연도	기관명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부당 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반납액
2022	대한노인회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6,428,067	6,283,435	144,632	0	0	144,632
2023	대한노인회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6,797,309	6,696,810	100,498	0	0	100,498

〈 2024년 ‘아동안전지킴이(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10월 말)	집행잔액 (10월 말)	불용예상액	예상 불용률(%)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 (전환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7,006,020	7,006,020	0	0	0

타) 기타 교통활동 지원(전환사업)

- 동 사업은 교통경찰관의 외근활동 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물품 및 예산 지원, 국제운전면허증의 원활한 발급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6억5천8백만원) 대비 18.0% 증액한 7억 7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기타 교통활동 지원(전환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658,523	658,523	777,540	119,017	18.0
사무관리비	658,523	658,523	713,940	55,417	8.4
공공운영비	0	0	900	900	1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0	0	62,700	62,700	100

- 동 사업 중 ‘교통외근경찰 계절 용품 지원(사무관리비)’을 위하여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단속은 약 290만건(2,882,104건)으로 전년 268만건(2,677,862건) 대비 8.0% 증가함에 따라 2025년에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단속 활동도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교통경찰의 외근 확대로 인한 계절 용품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교통외근 활동 지원(사무관리비)’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외근 활동 지원 = 376,674천원 - 교통외근경찰 소모품 등 1,660,461원*31개서*4분기 = 205,898천원 - 교통외근경찰 세탁비 4,000원*1,231명*24회 = 118,176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외근 활동 지원 = 365,898천원 - 교통외근경찰 계절 용품 지원 160,000,000원*1회 = 160,000천원 - 교통외근경찰 소모품 등 1,660,461원*31개서*4분기 = 205,89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운전면허증발급서식 구매 등 = 52,6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운전면허증발급서식 496원*100,000부 = 49,600천원 ▷ 국제운전면허증사진보호필름 30원*100,000매 = 3,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외근경찰 세탁비 = 65,136천원 - 근무복 4,000원*1,357명*12회 = 65,136천원 ○ 면허업무 지원 = 78,106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운전면허증발급서식 500원*120,000부 = 60,000천원 - 국제운전면허증사진보호필름 40원*120,000매 = 4,800천원 - 어르신운전중 표지제작 2,000원*6,653매 = 13,306천원

〈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유형별 분류) 〉

(단위 : 건)

유형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10,150,028	1,952,995	1,628,003	1,828,553	2,677,862	2,882,104
음주운전	67,651	14,330	13,314	12,626	15,817	15,361
무면허운전	31,413	5,425	4,809	5,394	7,878	9,708
신호위반	1,642,203	119,242	85,867	306,869	626,996	705,121
중앙선침범	71,515	24,336	15,547	12,189	11,981	9,680
과속	6,165,219	1,070,409	1,043,967	1,123,051	1,633,931	1,848,140
안전운전 의무위반	67,697	16,445	14,037	13,897	13,634	13,096
보행자 위반	621,449	47,549	27,019	15,122	39,087	33,319
기타	1,482,881	655,259	423,443	339,405	328,538	247,679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다만, ‘교통외근경찰 세탁비’가 전년(1억1천8백만원) 대비 44.8% 감액한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외근 교통경찰관들은 현장 간담회 시 근무복 세탁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외근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세탁비 지원에 대하여 전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교통외근경찰 세탁비(사무관리비)’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외근경찰 세탁비 4,000원*1,231명*24회 = 118,176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외근경찰 세탁비 = 65,136천원 - 근무복 4,000원*1,357명*12회 = 65,136천원

- 다음으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드론 교통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실시간 교통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통 드론’ 도입을 위하여, 드론 세트 구입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56,900천원), 유지·관리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3,900천원) 등 총 6천 1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구성	재원	드론 본체	컨트롤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조종기 1세트 · 보험료(대인·대물) · 자격증 취득 지원 · 소모품비 / 영상 편집용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게 : 5.5kg · 길이·높이 : 1,000mm*500mm · 최고속도 : 40km/h · 최대이륙무게 : 9kg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드론 구매(자산및물품취득비) 및 운영(공공운영비) 등’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시설 업무 지원 = 3,000천원 -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3,000,000원*1명 = 3,000천원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공공운영비		○ 드론 유지비 = 900천원 - 관리비 및 수리비 등 400,000원*1대+500,000원*1대 = 900천원
	증감사유	
	○드론 장비(1대) 신규사업에 따른 관리비 편성	
자산및물품취득비		○ 교통시설업무 장비 지원 = 56,900천원 - 드론 구매 51,500,000원*1세트 = 51,500천원
		- 컴퓨터(카드 프로그램 포함) 4,500,000원*1대+900,000원 = 5,400천원
	증감사유	
	○교통시설 업무 장비 지원 : 급변하는 도로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드론 적극 활용, 경찰 인력의 효과적 운용	

〈 드론 활용 계획 〉

① 서울시-서울청 간 드론 교통관리시스템 연계

- 드론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TOPIS 상황실-서울청 교통정보센터 간 실시간 전송 체계 구축, 교통관리·단속 등 활용



② 다양한 교통업무에 활용, 스마트 교통관리 체계 구축

- ('24년) 市 교통실 드론 활용, 교통시설 개선 효과분석 등 실시(단속 제외)
- ('25년) 서울청 드론 운용, 두바퀴차(이륜·PM·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귀성길 정체 구간 교통관리 지원 등 교통업무 시 폭넓게 활용

- ▶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전·후 효과 분석 : 주변 도로 포함 전반적인 교통흐름 모니터
- ▶ 상습정체구간 신호 개선 전·효과 분석 : 차량 대기길이, 차량 속도 등
- ▶ 지역축제 등 다중운집행사 시 교통관리 : 행사장 주변 교통관리 지원
- ▶ 휴가철 및 명절(설·추석) 귀성길 등 정체구간 교통관리 지원 : 실시간 화면 제공
- ▶ 현수막 부착, 교통정책 홍보 : 대형 행사(반려견순찰대 선포식 등) 시 활용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개인정보 보호법」(2023년 3월 일부개정, 2024년 3월 시행, 제15조제7항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신설)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에 “드론”을 명시, 제27조2에서 촬영사실 고지 의무에 드론의 예외성도 인정)에 따라 “드론”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경찰청 훈령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개정(제9조 운용 목적 및 범위를 확장)으로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단속 등에도 드론을 사용한 촬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교통 드론을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② 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경찰청 훈령 제1115호, 2024.3.19.) 제9조(운용의 목적 및 범위)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6호에 의한 재난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 수색
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테러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을 위한 인명 수색
5. 「도로교통법」 제7조에 따른 교통관리 및 동법 제160조제3항 본문에 정하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
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 현장, 「경비업법」 제2조에 의한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8. 그 밖에 각 경찰관서의 장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경찰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드론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TOPIS 상황실과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 간 실시간 전송 체계 구축을 통해 교통관리·단속 등 활용을 통해 다양한 교통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2025년에 드론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까지 드론의 1회 운용시간은 평균 25분 내외로,⁹⁾ 1대의 드론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여부와 드론의 추가적인 구입을 통해 비행시간 극대화 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TOPIS(Transport Operation & Information Service)"는 서울의 전체 교통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종합교통관제센터로, TOPIS는 버스 관리 시스템(BMS), 교통 카드 시스템, 무인 감시 시스템, 서울 교통방송, 서울경찰청 및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교통 관련 기관으로부터 교통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수행함.

※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https://www.spatic.go.kr/>)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서울 주요도로에 설치된 890대의 교통 CCTV를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첨단 디지털시스템을 활용한 현장 교통관리를 수행함.

9) DRONE MAGAZINE, "드론의 비행시간을 늘려줄 해답", 2024년 3월 6일자에서는 "현재 상용되고 있는 드론의 규격에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튬폴리머 배터리로는 평균 20~30분 내외의 짧은 비행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미주중앙일보, "드론 조종... 현장 즉각 출동해 요원들 눈 역할", 2024년 11월 1일자에서는 "드론은 평균 25분간 비행할 수 있으며, 2대의 드론을 교대로 사용하고 6대의 여분 배터리를 보유해 비행 시간을 극대화한다"고 하고 있음.

파)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 동 사업은 과속·신호위반 등 중요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합리적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장비의 지속적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23억1천3백만원) 대비 23.4% 감액한 17억 7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2,313,000	2,313,000	1,771,000	△542,000	△23.4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13,000	2,313,000	1,771,000	△542,000	△23.4

〈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자산및물품취득비	○ 무인단속장비 구매 = 2,313,000천원 - 과속 6대*29,000,000원 = 174,000천원 - 다기능 29대*31,000,000원 = 899,000천원 - 후면 31대*40,000,000원 = 1,240,000천원	○ 무인단속장비 구매 = 1,771,000천원 - 과속 7대*20,000,000원 = 140,000천원 - 다기능 41대*31,000,000원 = 1,271,000천원 - 후면 8대*30,000,000원 = 240,000천원 - 이동식 6대*20,000,000원 = 120,000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66대 대비 4대 감소 요청(25년 62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4대의 내용연수 경과 장비 중 수리 불가한 54대 불용장비 대체 구매 -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후면무인단속장비 8대 신규 구매 ○ 과속, 후면, 이동식 무인단속장비의 구매 단가 하향 조정 		

- 무인단속장비는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6의2)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별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 동 사업은 2023년에는 17억 6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무인교통 단속 장비의 1차 구매 후, 낙찰차액으로 2차 구매를 추진했음에도 13억 5천 4백만원만 집행하고, 23.4%(불용액 4억1천4백만원)을 불용 처리했으며, 2024년 10월말 기준예산 23억원 중 11억 3천만원을 집행했음에도, 연말에 전액 집행예정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 2023년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무인단속장비 구매	자산및물품 취득비	1,768,000	1,353,527	414,473	23.4%

〈 2024년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원인행위 누계액(10월 말)	향후지출예상 (12월 말)	불용예상액	예상 불용률(%)
무인단속 장비 구매	자산및물품 취득비	2,313,000	1,129,701	2,313,000	0	0

〈 최근 3년간 무인단속장비 계약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방식	입찰자	낙찰자	예산금액	계약금액	비고
2022년	2단계 경쟁입찰	아이티인 등 3개 업체	에스티엔씨	1,221,000	827,110	
	2단계 경쟁입찰	건아정보 등 2개 업체	건아정보	386,600	320,878	
2023년	2단계 경쟁입찰	진우산전 등 5개 업체	진우산전	1,868,000	1,061,607	
	2단계 경쟁입찰	토펬스 등 2개 업체	토펬스	818,000	410,000	
2024년	경쟁입찰(이동식)	에스에스티등13개 업체	에스에스티(이동식)	2,313,000	73,142	
	2단계 경쟁입찰	진우산전 등 4개 업체	진우산전(전면)		551,853	
	2단계 경쟁입찰	건아정보 등 3개 업체	건아정보(후면)		496,000	
	2단계 경쟁입찰	진우산전 등 3개 업체	진우산전	1,192,005	588,500	
	제3자 단가계약	-	토펬스 등 3개 업체	603,505	588,023	

* 2024년 무인단속장비 구매 집행잔액인 15,482천원은 '조달 수수료'로 집행 예정임.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다만, 최근 3년간 무인단속장비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구매계획보다 구매실적은 많은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무인교통 단속장비 단가를 너무 높게 책정함에 따른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소요 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치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통한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무인단속장비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

(단위 : 천원, 개)

사업명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구매계획	구매실적
무인단속 장비 구매	'22년	1,221,000	1,134,129	39	54
	'23년	1,768,000	1,353,527	58	88
	'24년 9월	2,313,000	-	66	74

※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386면 재인용.

- 다음으로, ‘후면단속장비’ 구매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사륜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것으로, 전년(12억4천만원) 대비 80.6% 감액한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4년에 시범 설치한 ‘후면무인단속장비’ 설치 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단속건수 중 이륜차 단속건수가 50.8%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후면무인단속장비’ 시범 설치 후 단속실적 현황(’24.10.31. 기준) 〉

운영 개시일		’24.03.01			’24.08.01				
구분	합계	중랑	동작1	동작2	관악	동대문	동작3	영등포	강남
단속건수	7,809	3,434	1,114	735	232	1,393	199	145	557
이륜차 단속	3,968	1,670	353	460	202	748	91	129	315

* 전체 7,809건 중 이륜차 단속건수는 3,968건으로 50.8%에 해당

** 이륜차 단속은 과속,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3가지 유형으로 단속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다만, 2024년에 경찰서별로 1대를 설치하고, 추가로 8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후면무인단속장비’ 설치에 있어서 단속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소 선정을 통해 설치가 필요하고,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륜차의 안전운전에 대한 계도 및 적극적인 단속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바, ‘후면단속장비’ 설치 확대와 동시에 이륜차에 대한 안전운전 홍보 및 현장 단속 강화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하)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및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은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회선사용료, 보험료 및 정기검사비 등의 공공요금 지출과 단속예고표지판 설치, 불용처리 및 장비이전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19억8천8백만원) 대비 1.0% 증액된 20억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988,743	1,988,743	2,003,427	14,684	1.0
공공운영비	1,988,743	1,988,743	2,003,427	14,684	1.0

-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단속장비의 회선사용료, 보험료 및 정기검사비 등의 공공요금 지출과 단속예고표지판 설치, 불용처리 및 장비이전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21억8천5백만원) 대비 22.4% 증액된 26억 7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2,185,136	2,185,136	2,674,252	489,116	22.4
공공운영비	2,185,136	2,185,136	2,674,252	489,116	22.4

※ “스쿨 존(School Zone)”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참조).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관리주체 관련 >

○ 무인단속장비와 자치구 CCTV 비교

구 분	일반 무인단속장비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주정차 위반 단속용 CCTV	방법용 CCTV
설치목적	교통단속	교통단속	교통단속	범죄예방·수사
설치권자	사도경찰청장·경찰서장 시장등(특별시장)	사도경찰청장·경찰서장 시장등(특별시장)	사도경찰청장·경찰서장 시장등(특별시장)	별도 규정 없음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4조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도로교통법 제4조의2 ·도로교통법 제12조4항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도로교통법 제4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 범죄 예방 및 수사를~)
과태료부과·징수권자	사도경찰청장	사·도경찰청장	시장등(특별시장)	해당 없음
운영장소	서울경찰청 영상단속실	서울경찰청 영상단속실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관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여 정하고 있음.

○ 스쿨존 장비는 자치구-서울경찰청 간 무상대부계약*에 따라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

< 설치 및 운영·관리 주체 >

구 분	설치 (소유권)	운영·관리 (무상대부계약)
주 체	자치구	서울경찰청

< 관리비용 주체 >

대부기간 동안 관리비용		
초기 2년		2년 이후
하자책임 보증기간(2년)	납품업체	서울경찰청
전기·통신·보험 등 비용	자치구	

※ 무상대부 사유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따라, 단속 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에서 운영(소유권 이전되지 않음)

제75조(무상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물품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물품 대부(사용) 합의서						
물품대부를 하고자 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명	영도교구청	부서명	교통정책과	과제명		
담당직원(인주)	홍영	장기	단기	구분	상	비
담당직원(인수)	정준	과	과	과	과	과
대부 조건	무상대부 물품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필요 기간(소요한) 및 관련 비용은 사용처(사용처)에서 부담한다. (주) 30년 간의 평가대상(보통) 및 평가대상(보통)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평가) 확정					
무상 대부 필요 사유	도로교통정책 비의 과(인주)의 연속 인원이 있는 경우(평가)에서 운영					
상기 물품을 인계 합니다. 2024. 0. .						
인계자	(인주 인사과) 정준(인수 인사과) 홍영(인수 인사과) 교통정책과장					
물품대부를 받고자 하는 기관						
기관명	서울특별시(인수)인수	부서명	교통정책과	과제명		
무상대부 받은 후	물품의 용도	계정처리	과수 무인단속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24. 0. .						
인수자	(인수 인사과) 정준(인수 인사과) 홍영(인수 인사과) 교통정책과장					
주 : 조부금 제정하여 인계 인수가(인수) 1부에 보관한다.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일반 “무인단속장비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0억 3백만원,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6억 7천 4백만원 등 총 46억 7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무인 교통단속장비는 교통사고 예방효과 등으로 장비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서울시의 무인 교통단속장비 운영 대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 2022년에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운영비가 2025년부터 반영되어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은 전년(21억8천5백만원) 대비 22.4% 증액된 26억 7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2023년에 설치된 197대는 2026년 예산 편성시 반영됨에 따라 점점 무인단속장비 운영비 규모 증가가 예상되는바, 설치된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성·필요성을 점검하고 효과성이 낮은 장비는 이전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에서 2025년 예산안에서 운영비를 내는 대수는 1,200대 ('20년, '21년, '22년 설치 1,200대)이고, 2023년에 설치된 197대는 2026년 예산 편성시 운영비에 포함될 예정이고, 2024년에 설치된 121대는 2027년 예산 편성시 운영비에 포함될 예정임.

〈 무인단속장비 운영 현황('24년 10월 기준) 〉

(단위 : 대)

구분	총계	고정식				이동식
		소계	과속	다기능 (과속·신호)	구간	
합 계	2,219	2,200	561	1,581	58	19
일 반	690	671	96	519	56	19
스쿨존	1,529	1,529	465	1,062	2	-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서울경찰청에서 관리·운영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예산을 일반 무인 단속장비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 안전부 지침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예규 제188호)」에 따라 국가로부터 이관되는 30개 자치경찰사업내역이 정해져 있는바, 이에 따른 사업명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전환사업) 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 하고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운영주체(모두 서울경찰청)가 다르지 않으나 무인단속장비가 스쿨존에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운영비를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무인단속장비 통합 운영을 통하여 행정력 낭비와 점점 증가가 예상되므로 운영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무인단속장비 운영 (전환사업)”과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전환사업)” 예산 편성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건의를 통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거) 다중운집행사 등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 동 사업은 효율적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다중운집행사 관리를 위해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의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전년(5천만원) 대비 50.0% 감액된 2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다중운집행사 등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50,000	50,000	25,000	△25,000	△50.0
사무관리비	50,000	50,000	25,000	△25,000	△50.0

〈 “다중운집행사 등 교통안전활동 현장 대응력 제고”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유관기관 회의 운영 등 = 50,000천원 - 회의실 대관비 = 12,50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등 7,500,000원 = 7,500천원 - 사무용품 구매 및 자료 인쇄 등 15,500,000원 = 15,500천원 - 교통약자 지원물품 14,500,000원 = 14,500천원	○ 유관기관 등 회의 운영 시 필요물품 등 = 25,000천원 - 문구류·교육자료 구입·사무용품 = 20,000천원 ▷ 서울청 5,000,000원 = 5,000천원 ▷ 사무용품 구매 및 자료 인쇄 등 16개서*600,000원 = 9,600천원 ▷ 사무용품 구매 및 자료 인쇄 등 15개서*360,000원 = 5,400천원 - 교통약자 등 교통 안전관리 물품 지원 등 = 5,000천원 ▷ 교통약자 지원물품 16개서*200,000원 = 3,200천원 ▷ 교통약자 지원물품 15개서*120,000원 = 1,800천원
	증감사유	
○ 회의실 대관비 예산 감액 및 안전관리 물품 재활용으로 인한 예산 감액		

- 서울시의 다중운집행사는 계속 증가('23년 593건, '24년 602건)하고 있으며,¹⁰⁾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전 위험성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현장관리 및 사후 보고 하는 다중운집행사도 증가('29년 19건, '24년 27건, 42.1%↑)하고 있음.

10) 서울시 재방안전예방과 자료임(2024년 11월 8일 자치경찰위원회 별도 제출 자료 재인용).

〈 2023년 ~ 2024년 9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 다중운집행사 지휘·의결행사 현황 〉

구분	회의일자	안전명	비고
1	'23.3.27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0차 의결
2	'23.4.18	「여의도 봄꽃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2차 의결
3	'23.4.18	「루이비통 패션쇼」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2차 의결
4	'23.4.18	「서울페스타 2023」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2차 의결
5	'23.4.18	「강남뮤직페스티벌」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2차 의결
6	'23.4.18	「성북세계음식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2차 의결
7	'23.6.13	「BTS 10주년 FESTA」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7차 의결
8	'23.6.27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8차 의결
9	'23.6.27	「라틴아메리카 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8차 의결
10	'23.6.27	「서리풀페스티벌」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8차 의결
11	'23.6.27	「서울뮤직페스티벌」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8차 의결
12	'23.6.27	「한성 백제문화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88차 의결
13	'23.8.10	「2023 잼버리 K-팝 공연·폐영식」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94차 의결
14	'23.9.19	「건군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97차 의결
15	'23.9.26	「서울세계불꽃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98차 의결
16	'23.9.26	「헬러윈 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98차 의결
17	'23.9.26	「구로G페스티벌」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98차 의결
18	'23.9.26	「강남페스티벌」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98차 의결
19	'23.9.26	「제야의 종 타종행사」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98차 의결
1	'24.1.23	「서초구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12차 의결
2	'24.1.23	「제94회 동아마라톤」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12차 의결
3	'24.1.23	「응봉산 개나리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12차 의결
4	'24.3.19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25차 의결
5	'24.4.2	「4.19혁명 국민문화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27차 의결
6	'24.4.2	「홍대레드로드페스티벌」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27차 의결
7	'24.4.2	「서울페스타 2024」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27차 의결
8	'24.4.2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27차 의결
9	'24.4.2	「부처님오신날 연등회」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27차 의결
10	'24.4.2	「중랑 장미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27차 의결
11	'24.4.2	「강북페스타2024」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27차 의결
12	'24.5.30	「쉬엄쉬엄 한강3종 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35차 의결
13	'24.7.10	「쿠팡 플레이 시리즈」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42차 의결
14	'24.7.10	「드론 라이트쇼」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42차 의결
15	'24.7.10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42차 의결
16	'24.7.10	「구로G페스티벌」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42차 의결

17	'24.7.10	「서리풀페스티벌」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42차 의결
18	'24.7.10	「한성 백제문화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42차 의결
19	'24.7.10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42차 의결
20	'24.9.25	「국군의 날 시가행진」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52차 의결
21	'24.9.25	「은평 누리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52차 의결
22	'24.9.25	「관악 샤로수길 로컬이벤트」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52차 의결
23	'24.9.25	「서울세계불꽃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52차 의결
24	'24.9.25	「크리에이티브X성수」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52차 의결
25	'24.9.25	「강동 선사문화축제」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52차 의결
26	'24.9.25	「헬러윈데이」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52차 의결
27	'24.9.25	「제야의 종 타종행사」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152차 의결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또한, 서울연구원의 『다중운집 취약성 분석 기반 서울시 인파 안전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은 인파사고가 심각하다고 인식(서울시민 10명 중 7명 (74.6%)은 다른 재난 유형과 비교했을 때 인파사고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인파사고가 1년 이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8.2%)하고 있으며,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원인으로 축제, 행사, 집회가 79.2%,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장소로 대규모 축제·행사 공연 등의 주변 지역이 70.6%로, 다중운집행사가 인파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음.¹¹⁾

〈 도시 재난 대피 인파사고 심각성 〉



11) 원종석 외 4인, 『다중운집 취약성 분석 기반 서울시 인파 안전관리 방안』, 서울연구원, 2024년 7월, 113-116면 참조.

- 더욱이, 안전한 다중운집행사는 사후대응보다 사전대책이 더 중요하므로, 동 사업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의 다중운집행사 사전 위험성 평가지표를 활용한 사전관리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다중운집행사 관리라고 하겠으나, 동 사업의 안전관리 물품 재활용으로 인한 감액(14,500천원 → 5,000천원)은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부족이 우려되는바, 필요 물품 보유 수량에 대한 적정성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너)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전환사업)

- 동 사업은 유실물 중 유가치한 습득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유실물 보관·반송·반환·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년 (7천1백만원) 대비 15.3% 감액한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71,242	71,242	60,360	△10,882	△15.3
사무관리비	31,066	31,066	26,880	△4,186	△13.5
공공운영비	40,176	40,176	33,480	△6,696	△17.0

〈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유실물 업무 종합관리 운영 = 31,066천원	○ 유실물 업무 종합관리 운영 = 26,880천원
	- 유실물 보관 봉투 200원*172개*12월*32개소 = 13,210천원	- 유실물 보관 봉투 200원*275개*12월*32개소 = 21,120천원
	- 유실물 폐기 봉투 900원*35개*12월*32개소 = 12,096천원	- 박스테이프 1,500원*10개*12월*32개소 = 5,760천원
	- 박스테이프 1,500원*10개*12월*32개소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 5,760천원	
	증감사유	
	○ 유실물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유실물 매각 후 국고로 귀속되고,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받고 있어 '23년 전환 당시 예산으로 감액	
공공운영비	○ 유실물 업무 종합관리 운영 = 40,176천원	○ 유실물 업무 종합관리 운영 = 33,480천원
	- 반송 비용 108,000원*12월*31개소 = 40,176천원	- 반송 비용 90,000원*12월*31개소 = 33,480천원
	증감사유	
	○ 유실물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유실물 매각 후 국고로 귀속되고,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받고 있어 '23년 전환 당시 예산으로 감액	

- 유실물 관리업무는 관련 법령(「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제2조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다) 유실물 보관반환매각 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① 유실물 관련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처리업무 ②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유실물 관리 시설 개요 〉

(조직/인력) 서울청 1명 / 경찰서(31개서) 1~2명 / 서대문센터 5명

- 서울청 :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 범죄예방질서과 (담당 1명)

▶ 서울시 유실물 관리업무 총괄계획 수립 및 통계와 각종 권한부여 등 지도

- 경찰서 : 31개 경찰서별 유실물담당 관리(담당 1~2명)
 - ※ 서울시교통공사 유실물처리
 - lost112 등록·관리→2주 간격, 관할경찰서 이첩 처리
- 센터 : 서대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서대문 유실물센터 관리(담당 5명)



- 소재지 : 서대문구 연희로 11나길 32(지하1층, 지상2층)
- 시설 : '89년 건축, 건평 145.5평(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요업무 : 습득물 관리(9개월), 국고귀속, 공매처리(분기별) 등
- 관리인원 : 총 5명[센터장(경감)외 일반직원 4명]
 - ※ 직원 24시간 상주 근무, CCTV 총 16대 설치감시

※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390면 재인용.

<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유실물품 현황 >

구분	습득물 접수(건)					습득물 처리(건)					
	총 건	물건	현금	증명서	기타	반환건	국고귀속	폐기	보관중	기타 (습득자취득, 양여 등)	
서울청	2022	327,654	232,933	20,984	23,807	49,930	224,840	38,537	44,818	961	49,078
	2023	369,947	267,584	25,860	24,286	52,217	230,608	35,245	62,274	21,574	20,246
	2024. 9월말	293,199	214,296	18,616	18,374	41,913	139,891	2,203	31,371	136,954	3,755

※ 2024년 습득물 처리 통계는 민법 제253조의 보관기관 및 유실물법 제14조의 습득자 수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집계 진행 중(보관기간 6개월, 습득자 수취기간 3개월).

※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393면 재인용.

- 동 사업 예산은 유실물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유실물 매각 후 국고로 귀속됨에 따라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일부 국비를 지원받음에 따라 2023년 전환 당시 예산으로 감액한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유실물처리 업무는 자치경찰사무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담당 경찰공무원이 처리하며, 유실물처리 업무 비용은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유실물 매각대금('22년 5억원, '23년 6억1천만원)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있으므로, 예산 부족분에 대한 일부 국비 지원이 아니라 유실물 처리 업무 비용 전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2년 유실물 매각현황 〉

국고귀속	귀금속(건)	시계(건)	카메라(건)	전자(건)	기타(건)	계(건)	매각대금(원)
1분기	814	276	37	125	1,452	2,704	126,720,000
2분기	887	329	50	134	2,059	3,459	118,880,000
3분기	870	236	41	111	1,757	3,015	134,700,000
4분기	910	201	64	132	1,847	3,154	119,339,800
합계	3,481	1,042	192	502	7,115	12,332	499,639,800

〈 2023년 유실물 매각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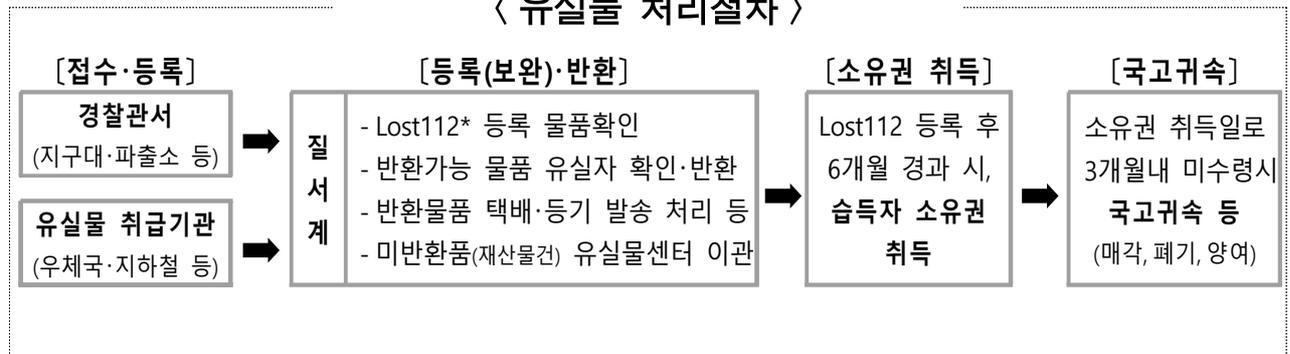
국고귀속	귀금속(건)	시계(건)	카메라(건)	전자(건)	기타(건)	계(건)	매각대금(원)
1분기	725	338	35	100	2,045	3,243	105,783,600
2분기	739	416	43	89	3,090	4,614	152,900,000
3분기	1,198	339	76	87	2,986	4,686	187,850,000
4분기	1,114	286	75	69	2,799	4,343	166,850,000
합계	3,776	1,379	229	345	10,920	16,886	613,383,600

〈 2024년 9월까지 유실물 매각현황 〉

국고귀속	귀금속(건)	시계(건)	카메라(건)	전자(건)	기타(건)	계(건)	매각대금(원)
1분기	1,042	356	56	70	3,627	5,151	186,850,000
2분기	1,132	342	35	47	4,087	5,643	210,330,000
3분기				-			
4분기				-			
합계	16,688	5,540	933	1,811	43,784	69,230	2,623,226,800

※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393-394면 재인용.

〈 유실물 처리절차 〉



*Lost112란? 전국 경찰관서에 신고 접수된 유실물 통합관리 구축 시스템(www.lost112.go.kr)

- ▶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서 제출, 7일 이내 미제출시 보상금(5~20%) 및 소유권 취득권리 상실
- ▶ 습득물을 제출 받은 경찰관은 즉시 Lost 112 등록
- ▶ 분실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유실물 중 재산물건(유가치)은 유실물 관리센터로 이관
- ▶ 공고 후 6개월 동안 유실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습득자 소유권 취득, 소득세(22%) 납부
- ▶ 소유권 취득한 자가 3개월 내 권리행사하지 않을시 소유권 상실, 국고 귀속 후 매각·폐기 등 진행

※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389-390면 재인용.

- 또한, 유실물 매각대금이 귀속되어 자치경찰사무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인 유실물 매각대금, 교통위반 등으로 인한 범칙금, 과태료 등이 서울시로 귀속되어 자치경찰사무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발생한 모 경찰서 직원의 유실물 교통카드 500여장에 대한 현금 편취 사건에 따라¹²⁾ 7월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종로, 서대문 등 1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실물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유실물 접수 및 처리에 대한 경찰서별 상이한 조치를 지적하며, 유실물 관리·감독은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자치경찰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유실물 관리 업무의 철저한 관리·감독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

12) 서울신문, “경찰서 직원의 배신” ... 분실 교통카드 갔다왔더니 잔액 800만원 챙겼다, 2024년 10월 10일자.